



제5부 음악 정책 동향

제1장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제2장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제3장 해외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1장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제1절 음악산업 정책 동향

1.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 발표

2009년 2월 4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을 세웠다. 이번 중기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한국음악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협력 강화, 대중음악 내수시장의 활성화, 음악산업 인프라 구축 및 성장기반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하에 8개의 핵심과제와 15개의 일반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하여 국고 1,2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중음악공연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음악산업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암동 콘텐츠홀(360석 규모)과 올림픽홀(3,900석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대중음악공연장 확충에 나서고 이번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 달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음악산업 시장규모를 2008년 8,440억 원에서 2013년 1조 7천억 원으로 신장시킬 계획이다.

2. 음악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한국 음악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복제 및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 저작권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은 크게 불법저작물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정정지제도 도입, OSP의 책임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개정된 저작권법의 골자는 보다

폭 넓고 근본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으로 볼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올린 혐의로 3회 경고를 받은 이용자가 다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자신의 ID로 로그인할 수 없는 계정정지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불법복제물이 오른 웹사이트 중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OSP가 계속하여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OSP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OSP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시정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콘텐츠 복제 및 유통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24시간 불법저작물감시시스템인 ‘ICOP-II’를 개발하고, 그 적용대상을 음원에서 영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보호정책에 따라 그간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OSP들도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다음과 네이버는 전문솔루션 업체와 협력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있으며, 싸이월드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필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방지의 정책적 노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이뤄질 것이며, 한국 음악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저작권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2009년 8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연)는 NHN(주)와 음악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신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음저협과 음실연은 NHN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각종 상품개발 등 관리저작물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NHN은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강화와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원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원구매 상품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정부가 구성할 저작권 상생 협약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며 향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등 저작권의 3주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처음으로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다음커뮤니케이션(Daum Communication)이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 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3단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3단체는 다음 이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한 UCC(순수제작물)의 활성화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제2절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1. 진흥법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개요

1999년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계법’)은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음비계법에서 음반부분을 독자적으로 편제하여 ‘음반’ 산업이 아닌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과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음반의 정의규정이 확대되었다. 음반을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과 전자적으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하여 디지털형태의 음원과 뮤직비디

오를 음악산업진흥법의 지원범위에 포섭했다.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조항이 신설되었다.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 진흥법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했다. 음반 식별표시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여, 불법유통방지 및 정산의 합리화, 정보제공 등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신고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음악산업구조가 음반복제작업 중심에서 기획제작업 중심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의 경우도 신고대상으로 되었다. 또한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했다.

표 5-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음원의 개념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
음악 영상물의 개념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 음악의 실연에 대한 영상물도 포함(법 제2조 제6호)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파일 :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법 제2조 제5호) • 음악영상파일 :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법 제2조 제7호)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창업 활성화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을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자 지원(법 제4조, 영 제2조)
음반 수입 추천	폐지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종업원이 대신하여 교육 가능, 교육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 불가(법 제11조, 영 제5조, 규칙 제5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예외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음반 등의 유통·시청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신고 예외(법 제16조 제1항, 영 제7조, 영 부칙 제3조)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법 제16조 제2항, 규칙 제7조)
노래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객행위 금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희를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 알선 금지 → 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
영업의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 서버 •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 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표시사항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사항 : 상호, 제호, 제작년월일,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 • 표시방법 :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제작년월일과 식별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는 상호·제작년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 법 제25조, 시행령 제11조

표 5-1-2 업종 및 영업구분 예

업종구분	영업영역	비 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법 제2조8호) *시·도 신고업 (법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기획 제작하는 영업	음악콘텐츠제작자/저작인접권자/최초의 원정보(원판) 제작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법 제2조9호) *시·도 신고업 (법 제16조)	음반 등을 수입(유통판 수입 포함)하여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 등의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판매업자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음반·음악영상물 대량 제조 생산자 복제·배포권리자 외국직배사 등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법 제2조10호) *자유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시중 판매상 (오프라인·온라인)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법 제2조11호) *시·군·구 신고업 (법 제1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음악서비스포털
노래연습장업(법 제2조13호) *시·군·구 등록업 (법 제18조)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노래연습장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음악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의 대상에 포함된다(제2조).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양 법은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002년에는 문화산업의 범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추가되었으며, 품질인증,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고시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온라인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먼저 문화산업의 범위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 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지구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산업에 만화, 에듀테인먼트 및 모바일문화콘텐츠 분야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우수공예문화상품 관련 규정이 우수문화상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적재산 보호사항이 추가되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도 신설되었다.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규정 신설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산업 분야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완성보증제도 도입, 공정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도입, 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 전담부서 인정제도를 도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등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3) 콘텐츠산업진흥법

이 법은 2002년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10년 5월 1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이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바뀐 것이다. 이 법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제작자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과 관련하여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를 위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콘텐츠 식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조항으로 재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유통환경의 현황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등 콘텐츠 유통 사업자 등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제작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개선되어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콘텐츠를 유통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청약철회,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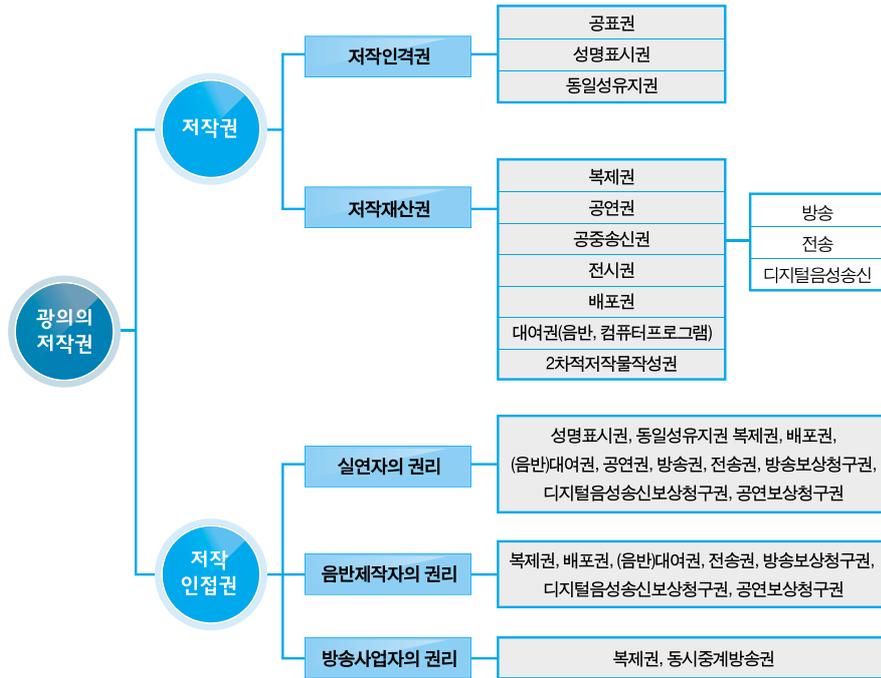
2. 보호법

1) 저작권법

(1) 개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작사·작곡자 등 저작자 보호, 실연자·음반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와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 사적 복제 등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문화발전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며,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그림 5-1-1 저작권 개요



(2) 저작권

음악이 창작성이 구비되면 저작물이 되며, 이를 창작한 작사·작곡자 등은 저작자가 되며,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또한 저작권의 효력발생에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창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크게 나누면 인격적 이익을 대별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일신전속권이다.

표 5-1-3 저작인격권의 종류

종류	권리	내용
공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공표권은 음악저작물의 경우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작품을 제 3자가 공연,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공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작사·작곡가 등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 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주의할 것은 그의 예명을 사용하는 작사·작곡가의 경우 그 예명이나 필명, 아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명을 실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은 음악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 편곡 등으로 동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옳으나, 사후에라도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금지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또 다른 특징은 저작물을 단순히 최종 사용자로서 보거나 듣거나 향유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고, 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일정행위만을 지분권 형식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배타적 허락권인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각종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인정, 물권유사의 배타적 지배권(현실적으로는 위탁 또는 대리·중개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먼저 저작물의 유형적 이용행위로는 복제와 배포가 있는데, 먼저 복제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본·악보 등의 경우에는 이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녹화하는 것,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별도로 배포권을 인정함으로써 불법복제자뿐만 아니라 불법유통자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위 최초판매이론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유통경로로 구입한 경우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최초판매이론에 있어서도 ‘음반’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물의 무형적 이용행위로는 공연, 공중송신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 등을 통하여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여 송신하는 경우 후술하는 방송과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어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를 공연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 및 방법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전송 및 디지털 음성송신 등 모든 송신행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공중송신개념이 2006년 개정법에서 신설되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디지털 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성 또는 음향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된다. 디지털 음성송신권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는 보상청구권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미술저작물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는 전시권이 있는데, 미술저작물의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유권자가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의 소재로 이용할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만,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2차적 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의 성립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자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표 5-1-4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내용		
복제권	복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공연권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공중송신권	방송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대여권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3) 저작권의 제한

① 비보호저작물

입법부의 헌법이나 법률, 행정부의 고시나 공고,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모두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들의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비보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이다. 다만, 저작자 사망 후라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된다. 이를 사망 시 기산주의라 하는데,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결정된다. 한편, 사망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무명저작물이나 업무상저작물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공표 후 다음 해로부터 50년간을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 시 기산주의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결정되는 경우에 창작 후 50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 후 50년이 되는 해에 저작권이 만료된다.

③ 공정이용

저작권제도는 오로지 저작자의 권리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호함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그 이외의 어느 범위까지를 이용자의 자유이용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 범위는 각국의 저작권법을 논함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을 통하여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이를 통하여 일반대중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칙을 정립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범위, 바꿔 말하면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개별적인 법 규정들로서 설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까지이다.

이를 열거하자면 재판절차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가 있다. 한편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일정 유형의 저작물 이용 시 저작물의 번역·편곡·개작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고, 제37조에서는 일정 유형의 저작물 이용 시 그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8조에서는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 저작권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은 오로지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2010년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이용자가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즉, 개정안 제30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복제물을 복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¹⁾

④ 법정허락

이 밖에 법정허락도 저작권 제한의 한 유형인데, i)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ii) 공익상 필요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iii)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30조 단서 및 제101조의3제1항 제4호 단서를 위반하여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한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兵科)할 수 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는 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며, 음반 제작자는 감동을 영속시키며, 방송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준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하며,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 하여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이라 한다.

①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제2조 제4호).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및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9년 3월 1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과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일명 “로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2009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실연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열악한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제작에 재투자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 2차적 사용청구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여권도 이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음반 제작자의 권리

‘음반’이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반 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내지 제6호)). 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자에게 복제·배포권, 전송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공연보상청구권을 음반 제작자에도 부여했다. 실연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 2차적 사용청구권은 지정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③ 방송 사업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9호), 방송 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

④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i)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ii)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먼저 고정할 때, iii)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i)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ii)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 iii)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각각 5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86조).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 3자에 의한 복제·전송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저작권 등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2006년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했다(제104조).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는 P2P 서비스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P2P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파일(저작물) 교환(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업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제142조).

(6)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위 ‘3진 아웃제’가 실시되었다.

먼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3회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 복제물의 수량, 불법 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등록 및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않는 소위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에 있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음원의 귀속처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표 5-1-5 저작권등록의 효과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 년, 월 일 또는 공표 년, 월, 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년, 월, 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력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등록을 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

저작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어 이용되며 그 침해의 형태 또한 복잡 다양한 관계로, 각각의 저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3의 주체에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위탁하여 그 주체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역시 개개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 일일이 그 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접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이를 ‘집중관리단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각 영역에서 저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 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탁관리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다.

(8)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① 민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로는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은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저작권의 준물권적 성질에 유래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며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폐기청구권은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형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미국 등의 압력,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향상과 관계 당국의 보호에 대한 의지로 말미암아 보호강도도 높아져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병과할 수도 있어 그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의범만이 해당되며, 과실범 및 미수범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범죄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침해행위도 다양하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이용질서를 해쳐 저작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했다. 그리고 등록허위, 부정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위탁업 등과 같이 공익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법률상으로 대리행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중에서 침해자나 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반인에게 인계된 것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법적인 성격도 가진다.

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5년간 보호되며(제37조 제1항),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경쟁 사업자가 무단으로 복제·배포·방송·전송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불법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서비스·장치의 제조·제공·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친고죄이다(제40조).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제4조).

3. 규제법

1) 공연법

공연법은 제반 공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여기서 공연이란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 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연소자(18세 미만)에게는 유해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선전물의 배포 및 광고를 금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연의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이익·국민감정·공서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공연법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공연장의 허가·검사·취소, 공연자·공연장경영자·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물에는 '음반'이 포함된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여부의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동법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 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등급을 구분할 수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에 이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표시, 포장, 진열, 전시, 판매 등 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배급업자는 한 번의 신고로 별도의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제2장 국내 음악산업 지원 현황

제1절 음악산업 정부(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현황

1. 창작 인재 발굴 및 지원

1) 신인 발굴 사업

음악시장이 일부 장르와 대형가수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신인가수와 인디 뮤지션 등 가능성 있는 신예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했다. 2009에는 악통의 앨범 「ACHTUNG」, 포미닛의 앨범 「Hot Issue」, 슈프림팀의 앨범 「Supreme Team to Excellent Adventure」, 비스트의 앨범 「Beast Is The B2ST」등 매월 우수신인을 발굴하고, 우수신인음반의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하여 지상파TV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했다.

표 5-2-1 2009년 이달의 우수신인음반 선정 결과

구분	선정음반
2009년	1월 ZY의 앨범 「Memories」
	2월 악통의 앨범 「ACHTUNG」
	3월 메이다니의 앨범 「7teen」
	4월 점퍼의 앨범 「Yes!」
	5월 AJ의 프로젝트앨범 「FIRST EPISODE A NEW HERO」
	6월 앤씨의 앨범 「Rising」
	7월 솔제이의 앨범 「미친 사랑의 추억」
	8월 포미닛의 앨범 「Hot Issue」
	9월 슈프림팀의 앨범 「Supreme Team To Excellent Adventure」
	10월 B2Y의 앨범 「B2Y 1st mini album」
	11월 슈아이의 앨범 「SHU-I first single」
	12월 비스트의 앨범 「BEAST IS THE B2ST」

우수 인디뮤지션 선정 지원 사업은 댄스, 발라드 등 특정 인기 장르의 대중가요가 아닌 주류 음악과 다양한 장르음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디뮤지션을 선정하여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방송과 공연을 통해 우수 인디뮤지션의 음악을 알리는 사업이다. 1차 포털 사이트의 UCC 접수를 통해 선정된 팀은 2차 공개 오디션을 거쳐 지상파 TV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표 5-2-2 2009년 우수 인디뮤지션 공개 오디션 선정 결과

구분	일시	장소	지원팀수	선정팀	비고
제1회	2009.4.17.		63개팀	소울스테디라커스, 악통, Koffee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제2회	2009.5.22.		42개팀	텔레파시, 제8극장, Victor View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제3회	2009.6.12.		64개팀	나비맛, 시와, 후나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제4회	2009.7.9.	상상마당	51개팀	아폴로18, 고고보이스, 로맨틱펀치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제5회	2009.8.9.		64개팀	몽니, 흙, 굴소년단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출연
제6회	2009.9.18.		64개팀	게이트플라워즈, 좋아서하는밴드, 노리플라이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출연
제7회	2009.9.30.		109개팀	데이브레이크, 박주원, 포니, 각스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출연

창작 국악 실험무대를 통한 젊은 국악 연주자 발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에 이어서 2009년 하반기에도 스타를 꿈꾸는 젊은 국악 연주자에게 창의적인 실험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천차만별★콘서트’를 개최했다. 본 콘서트는 24개의 출연 팀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팀당 2회의 단독 공연 특전이 부여된다. 아울러 우수 팀으로 선정되면 음반 제작의 기회도 주어진다.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음반 기획·제작사들의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망한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글로벌 신인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매월 신인 후보로 선정되는 6팀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엠넷이 제작하는 “M Rookies: 이달의 루키”에 출연하게 되며, 네티즌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1팀은 한 달 간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출연, 온·오프라인 홍보, 공연기회 등 다양한 지원했다.

표 5-2-3 2010년 이달의 우수신인 선정 결과 (글로벌 신인스타 프로젝트)

구분	선정음반 및 가수
2010년	6월 김여희 「나의노래」
	7월 아리밴드 「Kiss me darling」
	8월 틴탑 「박수」

또한 역량 있는 뮤지션에게 높은 수준의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대중음악시장의 창작저변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마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매월 선정되는 2팀의 공연마당 프로젝트 이달의 뮤지션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엠넷이 제작하는 “A-Live : Take out”에 출연하게 되며, 페스티벌 출연,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

표 5-2-4 2010년 우수 인디뮤지션 선정 결과(공연마당 프로젝트)

구분	선정뮤지션	비고	
2010년	6월	바닐라시티, 몽니	지산밸리락페스티벌 출연
	7월	카스(The Kox), 옥상달빛	지산밸리락페스티벌 출연
	8월	바람을 가르고, 안녕바다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출연
	9월	조정처, 랄라스윗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출연

2) 한국대중음악축제 - 2009 올해의 헬로루키 개최

국내 뮤지션과 실력 있는 신인들이 만드는 대형 음악 페스티벌 ‘한국대중음악축제-2009 올해의 헬로루키’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올 한해 ‘우수 인디뮤지션 선발 및 공연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선정된 헬로루키 22팀 중 사전 심사를 통해 7팀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여 ‘올해의 헬로루키’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연말 결선 무대로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이번 공연에서 2009 올해의 헬로루키 대상은 ‘아폴로 18’이며 특별상은 ‘텔레파시’, 인기상은 ‘좋아서 하는 밴드’가 차지했다.

또한 국내 뮤지션 10팀이 무대를 선보이며 모던락에서부터 재즈, 팝, 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적절한 조화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대중음악축제-2009 올해의 헬로루키

- 일 자 2009년 11월 14일(토), 17:30~22:30
- 장 소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 진 행 김C, 장윤주
- 출연 팀 헬로루키 7팀(노리플라이, 데이브레이크, 박주원, 아폴로18, 좋아서하는밴드, 텔레파시, 흠)
초청팀 (슈프림팀, 김정차마, 브로콜리너마저, 장기하와외골들, 한음파, 국카스텐, 피아, 뜨거운감자, 이승환, 김수철)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BS 스페이스 공감
- 관객규모 7,000여명

3) 신인 지원사업

한국 음악시장은 대형음반사들이 대표하는 소수의 아이돌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균형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신인

가수와 흥대 인디밴드 등 가능성 있는 신예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약 10억 원을 책정하며, 매년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몇몇 인디뮤지션들은 유명세를 타며, 오버그라운드로 나오고 있다. 2009년 상반기 큰 화제를 모았던 '장기하와 얼굴들'은 공중파 음악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인기를 실감했고, 인디밴드 뷰렛도 게임OST 참여, 뮤지컬 진출 등 다양한 활동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 대중음악은 아이돌 위주의 편중된 음악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형식의 음악시장을 창출하려 노력 중에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실력 있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대중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글로벌뮤직 쇼케이스 개최 사업은 한국 대중음악의 인지도를 극대화하여 한류확산 및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외 음악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상업공연과 차별화된 B2B 형식의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음악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했다.

2009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Feel Korea! K-Pop Night)가 문화체육관광부주최로 2009년 11월 25일 중국 상해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한국 음악을 현지에 홍보하고, 한국 가수들의 중국 진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도모했다. 아울러 한국 유명 디자이너 및 유명 캐릭터 뿌카의 패션쇼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음악산업 관계자, 미디어 및 일반 팬 등 약 8,5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9년 5월에는 국내 인기 드라마 및 OST를 홍보하기 위한 'OST 영상음악제'를 한류 드라마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서 개최했다. OST 영상음악제는 김태우, 화요비, 타루 등 총 7명의 가수가 참석, 현지 음악팬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연과 현지 음악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B2B 기업교류회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드라마와 함께 한국 가수 및 한국 대중음악이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의 시너지 제고를 통한 한류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뉴비즈니스 모델로 게임음악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게임 <아이온> OST는 뉴에이지 뮤지션 양방언이 참여하여 인기와 완성도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게임홍보와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3. 음악산업 인프라 강화 및 정책 연구

음악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기 위한 한국음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KOCCA 온라인 음악 아카이브(www.koccamusic.kr)는 총 2만 7천 건, 27만

곡의 음원 디지털화, 총 56만곡의 음원 DB를 구축해, 2009년 8월 오픈했다.

국내 음악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책,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음악산업계 이슈에 대한 객관적 연구·분석 보고서는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음악산업 분야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계와 밀착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음악산업 동향분석을 통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33회의 주간동향 리포트를 발표했고, 월간 1건씩 총 8건의 심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또한 6개의 해외 주요 대중음악 차트 및 14개의 해외 주요 시상식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에도 공신력 있는 대중음악 공인차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2절 음악산업 관련 협회 현황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음악저작물을 신탁한 저작자 수가 2009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964년 KOMCA 창립 당시 총 56명으로 시작하여 2000년도까지 36년 동안 회원 수가 약 4,000명에 불과했으나, 8년만인 2008년도에는 약 9,000명에 육박하여 급격하게 회원 수가 증가했고, 2009년 11월 5일, 역사적인 10,000번째 회원이 탄생된 것이다.

한편, KOMCA는 보다 많은 음악저작인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3월 신탁계약약관을 변경하여 그동안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이 되었던 것을 본인의 사에 따라 신탁만 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이원화했다.

2009년도 KOMCA 징수실적은 870억 5천여만 원으로, 징수목표액 805억 2천여만 원을 8.1% 초과달성했다. 당초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예산 목표 달성이 힘들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점차 사용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전송분야와 한류열풍으로 인한 외국 사용 수입, 저작권 권리 찾기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출판 분야 등에서 선전한 것이 목표 초과달성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한 일본에서의 한국 저작물 사용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제2의 저작권 수입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 5-2-5 2009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천 원)

관	항	예산액	집행액	달성율(%)
음악사용료 수입	방송사용료	16,251,000	17,201,406	106
	전송사용료	19,560,000	23,691,569	121
	웹캐스팅사용료	1,100,000	926,003	84
	광고사용료	718,000	831,271	116
	녹음사용료	11,520,000	11,301,610	98
	영화사용료	206,000	124,775,500	61
	출판사용료	929,000	1,032,971	111
	공연사용료	28,892,000	29,091,217	101
외국입금사용료	1,350,000	2,858,317	212	
합 계		80,526,000	87,059,142	108

2)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활동

(1)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분배규정 개정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 TNS, 노래반주기업체인 금영, 태진미디어, 그리고 TFT 실행기관으로서 제3의 중립단체인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8개 기관과 업체로「노래반주기 이용실태조사 TFT」을 구성하고, 노래반주기 로그데이터 수집,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이용실태 조사 등 7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분배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분배규정은 그동안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했던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데이터가 분배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협회가 오프라인 노래반주기의 로그데이터 수집 기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로, 분배의 투명성을 가일층 높였다.

표 5-2-6 과거 유흥, 단란주점 분배규정

(단위:%)

구분	수록 곡	온라인 로그데이터	협회 네트워크 데이터
	30%	40%	30%

표 5-2-7 과거 노래연습장 분배규정

(단위:%)

구분	수록 곡	온라인 로그데이터	비 고
	30%	40%	오프라인업소 반영 안 됨

표 5-2-8 새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분배규정

(단위:%)

구분	수록 곡	온라인 로그데이터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30%		70%

(2) 저작권선진화포럼 개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국내 저작권계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저작권선진화포럼」을 출범시켰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은 학계와 법조계, 저작권 유관단체 등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국내 저작권법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와 제도에 대하여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한편,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과 공연권 확대 방안 등 연구를 통해 법제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후 2010년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5-2-1 저작권선진화포럼



(3) 작품 가점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한국음악 문화발전에 기여한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 발전과 협회 회원들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고자 작품의 공표연도가 일정기간 경과한 작품에 대하여 분배가점을 부여하는「작품 가점제도」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림 5-2-2 작품 가점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4) 음악저작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담보 가치 인정

음악 창작인의 저작권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직은 일부 금융기관(지점)에 한정돼 있지만,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인들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신용평가를 음악저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는 것은 그 평가 수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KOMCA는 그동안 음악저작자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출 조건을 최근 3년간 수령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곡별 저작권료 내역을 기초로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5) 지상파 방송 음악사용 저작권료 단계적 인상

지난 1992년 이후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지상파에서의 음악 방송사용료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상파의 음악 방송사용료는 2005년부터 KOMCA와 방송사간에 끝없이 격돌해 온 사안으로, 지루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 말로, 아시아 및 유럽 각 2개국의 음악저작권협회와 국영 및 민영방송사의 방송사용요율을 현지 조사하여 파악된 사용요율의 60% 수준까지 인상을 하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를 체결한 후부터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KOMCA와 방송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송사용요율 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2007년 4월부터 2개월간 일본과 말레이시아,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 대한 해외 방송 사용 요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외 방송 환경과 저작권 처리 상황이 국내와 많은 차이를 보여, 실제 우리나라 방송사용요율에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합의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적용요율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또다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앞서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자, KOMCA는 음악저작물을 방송에서 전면 사용 중지할 것을 방송사에 통보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로 KOMCA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에 따른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결국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용요율을 인상한다는 최종 합의를 체결하게 됐다.

구분	2006(기존)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 요금(%)	0.305(KBS) 0.299(MBC, SBS)	0.312	0.353	0.393	0.441	0.488
전년대비 증가율(%)		10.21	13.14	11.33	12.21	10.6

구분	2006(기존)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도별 사용료	8,069,524	8,222,225	8,763,453	9,224,236	9,947,028	10,729,376

(6) 불법 음악저작물(음반, 인터넷) 단속 강화

음악저작자와 KOMCA 이사로 구성된 「침해음반대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에 발족되어 저작권보호센터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와 국도휴게소, 지역 축제 행사장 등에서 침해조사활동을 펼쳐왔는데, 2009년 한 해만 총 340개 회사에서 유통한 불법 침해음반을 적발, 이들 업체로부터 약 4억 5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

지속적인 단속 결과, 음반시장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해 주고 있는 음반 승인율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음반 도·소매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침해조사를 실시하여 음반증지의 부정사용 등 교묘한 침해유형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특히 고가의 음반에 비교적 저가인 민요증지를 부착 판매한 음반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적용함으로써 음반업계에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네이버(NHN)와 「음악 콘텐츠산업발전과 저작권보호,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문화 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음악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중국 길림성 지역에 서버를 두고 한국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서비스 해 온 중국 사이트 「오투스카이(o2sky.com)」와 「아이엠디제이(www.imdj.net)」를 적발하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09년 10월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긴급 체포(형사처벌) 및 사이트 폐쇄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2. (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

1) 2009년 및 2010년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현황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10년 6월 30일 기준 신탁음원 18만여 곡, 보상 음원 180만여 곡, ICN(Integrate Copyright Number: 통합저작권관리번호) 50만여 곡 등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음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식 및 식별체계의 표준화 문제 등으로 음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3단체와 KBS가 함께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음원 통합 메타DB를 구축하여 ICN을 발급했고 신규 음원의 효율적인 ICN발급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ICN 고도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음원에 ICN 코드의 메타데이터로 각종 음원 정보 및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것은 온라인 음악 판매 사업자들이 음원 판매 후 사용 내역에 ICN 코드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2009년 메이저 5개 권리사 (소리바다미디어, 벅스뮤직, M.net미디어, KT뮤직, 로엔Ent)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악 3단체가 협약을 맺어 ICN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음원을 등록하여 ICN을 발급 받게 되어 있다.

ICN(Integrated Copyright Number)이란 통합저작권관리번호를 일컫는 말로 음원 권리정보관리의 식별코드로서 협회가 ICN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코드 형식은 아래와 같다.

통합저작권 관리번호 형식

보기) ICN.203 = 1000056171 - A100012345

ICN.음악 = 음악저작권협회관리번호 - 음원제작자협회관리번호

2) 2009년 및 2010년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활동

(1)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공연보상청구권이 2009년 3월 25일 저작권법 부분 개정으로 마침내 도입되었다. 동 개정법은 2009년 9월 26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이에 앞서 협회는 2009년 9월 14일에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징수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백화점, 마트, 호텔, 항공사 등의 징수 대상 업체들과 보상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징수 대상 업체들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정관 개정

협회는 설립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총1,800여 회원사의 160만 여곡을 관리하며, 신탁 및 방송·디음송·공연 등의 영역에서 약 100억 원을 징수하여 회원사에 분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음반 제작자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내·외적 성장은 대의원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관의 개정 필요성을 야기했고 협회는 지난 2008년 4월에 이사, 감사, 회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이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확정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문화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협회는 2010년 정기총회에서 1기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정보화 사업 확대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 음악시장도 괄목할 만큼 성장해가고 있으며 이 음악시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체계적 정보 관리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식별체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음악시장에서는 권리자의 식별 코드인 ICN, 유통 사업자의 콘텐츠 식별 코드인 UCI가 존재하고 있으며 ICN과 UCI는 등록 관리기관에서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곳이 바로 협회이다. 또한 국내 모든 음악의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진행해온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가 있는데 2009년 12월 23일 협회와 KMDC 구축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협약을 맺음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음악시장 정보화를 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불법음원 근절 캠페인 활동 확대

200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엠넷 미디어는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이하 불끈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불법음원근절운동(이하 불끈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가두 캠페인, 대규모 콘서트, 대학교 축제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인기가수들이 동참한 가운데 불법음원 근절 동참 대국민 서명받기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약 2만 여명에 이르는 시민들로부터 불끈운동 동참을 이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보호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캠페인을 펼쳐나가며, 타 콘텐츠와의 연계로 전 국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5-2-3 불끈운동캠페인 현장 - '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 토론회'



(5) 국제 교류 확대

2008년도에 이어 올 한해도 다양한 국가들의 집중관리단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다. 먼저 지난 6월에는 문화부의 지원으로 문화부 및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실무자들과 함께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일본, 홍콩, 영국, 프랑스 등의 신탁관리단체들을 방문해 각국의 선진화된 집중관리 시스템과 저작권법 등을 연구했다. 또한 7월에는 중국의 장춘이공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동북아시아 비교법학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11월에는 일본의 음반 제작자 단체인 RIAJ를 연례 협의차 방문하여 양국 음반 제작자들과 음악산업의 현안에 대하여 토론했다. 더불어 12월 10일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우리 문화부의 주최로 인도네시아와 이란, 파키스탄의 저작권 관련 정부 공무원들이 협회를 방문하여 협회의 집중관리 시스템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림 5-2-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협회 방문



3.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1) 2009년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현황

저작권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는 2009. 9. 14.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어 2009년 9월 26일부터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공연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영업장)와 지정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다만, 보상금 징수대상 영업장들은 모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의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영업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음반을 주로 사용하는 영업장은 대부분 저작권자에게 납부하는 공연사용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2009년도 징수실적은 100억 1천만 원이며, 징수목표액 85억 5백만 원 대비 15억 5백만 원이 증가하여 목표대비 17.7%초과 달성했다. 또한 전년(2008년)도 징수금액 70억 3천 3백만 원 대비 29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2.3% 증대되었다.

구분	2008년 징수액	2009년 예산액	2009년 징수액	예산대비(%)	전년대비(%)
전송사용료	5,445,482,863	6,180,000,000	7,333,249,773	119	135
복제사용료	7,762,600	50,000,000	25,500,000	51	328
신탁사용료 계	5,453,245,463	6,230,000,000	7,358,749,773	118	135
방송보상금	1,531,724,726	2,200,000,000	2,570,471,941	117	167
디음송보상금	48,104,163	75,000,000	80,935,899	108	168
보상금 계	1,579,828,889	2,275,000,000	2,651,407,840	117	167
총 징수액 계	7,033,074,352	8,505,000,000	10,010,157,613	118	142

2) 2009년 및 2010년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활동

(1)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을 위해 음제협과 업무공조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9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연보상청구권이 도입됨으로 인해 백화점·할인마트 등 유통업체, 스키장·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등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저작권사용료 징수대상 중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실연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는 징수 효율 및 방안, 분배자료 확보, 조직편성 등 관련 업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음실련창립 20주년기념식 및 한국음악실연자대상 시상식 진행

2009년 12월 3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한국음악실연자대상 시상식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 음악실연자 및 유관기관 및 단체 포함 1,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

한국음악실연자대상 수상자 및 공연 출연진

- 진행 M.C : 이상벽
- 한국음악실연자대상 : 대중음악가수분야 - 송대관
대중음악연주분야 - 김동석
국악분야 - 목계월
순수음악분야 - 서울시립교향악단
- 공연출연진 : 서울시립교향악단 목관5중주단, 황용주, 김영임, 박상민, 김용임, 이자연, 배일호, 김동석, 송대관
- 연주 : 김춘광악단

(3) 음실련(FKMP)-예단협(CPRA/Geidankyo) 상호협약 체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2010년 4월 21일 도쿄에서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이하CPRA)와“음악실연자의 저작권접권 관련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음실련의 송순기회장, 유기선사무총장, 일본에서는 예단협 노무라만 회장, CPRA 사키모토 조 운영위원장, 주일한국문화원 강기홍원장 등 한일 단체 임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음실련과 CPRA 단체 및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협약으로 인해, 향후 일본 내에서 음실련 회원들의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대여사용료, 사적복제보상금을 일본 CPRA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료 및 보상금의 최초 정산은 2011년 말부터 이루어져 2012년 중에 회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음실련 회원들의 대여사용료의 경우는 10년을 소급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징수된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예정이며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및 사적복제보상금은 2009년 4월 1일 부터 징수된 금액이 송금되게 된다.

(4)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회원가입

음실련은 지난 5월 28일 루마니아 부크레슈트에 개최된 제35차 SCAPR 총회에서 SENA(네덜란드), MUYORBIR(터키), SAGAI(아르헨티나), VOIS(러시아)와 함께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 회원으로 가입됐다. SCAPR는 각 나라 30여 실연가권리관리단체가 참여한 국제실연가저작인접권집중관리단체 협의체로서, 음악실연자 저작인접권관리단체의 국제교류 및 상호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음악실연자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실련은 SCAPR 회원 가입을 계기로 세계적인 저작인접권관리단체간 운영 정보 교

류를 통해 한국음악실연자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의 실연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4. (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1) 2010년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활동

(1) 대한민국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 서비스 개시

현재 가온차트는 SKT 등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음악 서비스와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KT뮤직, 소리바다 등 온라인음악 서비스 사업자,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배경음악 서비스의 데이터 협조를 통해 집계하며, 음반량 집계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 미디어,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EMI, 비타민, 포니캐년 등 대표적인 음반유통사들이 참여한다. 가온차트에서 수집하는 차트 관련 데이터는 국내 음반/음원 매출 데이터의 약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www.gaonchart.co.kr)와 더불어 올해 2월 오프라인 차트지를 발간했고, 또한 아리랑TV, KBS라디오, 일본 스카이퍼펙트, 후지TV, 도쿄통신(잡지)등 국내외 미디어 및 매체 데이터 공급한 바 있다.

(2) 불법 음원 시장 관련 대응

포털 서비스(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대부분의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불법 음원유통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되고 있어 불법 음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웹하드, P2P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불법 음원 모니터링 실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참여하였으며, 웹하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행사를 11월에 개최한 바 있다.

(3) 음악산업통계 취합

음반사 분기별 오프라인 매출 자료 집계와 음반사 및 음원유통사 온라인 매출 자료를 집계했다.

(4) 음악시장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포털 서비스 내 불법음원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작성 하고 특수유형 OSP와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위한 사업모델 가이드라인 작성했다. 또한 정산 시스템 표준화 감리(audit) 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제3장 해외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1절 일본

최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본 정부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성숙단계에 들어간 일본 콘텐츠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정부 시책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음악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 도쿄아시아뮤직마켓(TAM)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시책 사례로는 2008년부터 제 5회를 맞이한 '도쿄아시아뮤직마켓(이하 TAM)' 이 있다. 경제산업성, 재단법인음악산업 문화진흥재단, NPO법인 영상산업진흥기구가 공동 주최하며 사단법인일본레코드가 협력하고 외무성이 후원하는 TAM은 일본 정부의 중요 음악 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다.

정부는 일본 아티스트의 쇼케이스를 해외에 개최함으로써 일본 음악산업 콘텐츠를 해외에 넓게 발산하는 지원 정책에 힘쓰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본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진행하는 상담회 개최, 해외 음악산업 상황과 문제 등을 패널 토론 형식으로 검토하는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가 있다. 특히 Japan 국제 콘텐츠페스티벌(Co Festa)의 오피션 이벤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TAM은 각 메이저레코드 회사, 음악사무소, 인디즈 등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B2B의 비즈니스 매칭의 장으로 해외 레이블과의 계약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개발로 인해 기존의 유통채널을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서 CD 매출 등의 특정 미디어의 시점에서 전체 시스템을 기획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또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미디어의 접근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 법제도의 정비 등 환경 개선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업계의 인사들과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등을 통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트렌드 창조, 아티스트 발굴·육성, 음악산업 환경 정비 등 거의 모든 시스템이 레코드 수익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트렌드 만들기가 한층 수월해진 현 상황에서 개성 있는 음악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프로세스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미디어 재구축은 또 다른 발상을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음악 비즈니스 및 이종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 불법 음악파일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정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 이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분은 불법 음악파일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일본음반협회가 조사한 ‘불법 핸드폰용 음악 배신에 관한 유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불법 모바일 음악의 다운로드 횟수는 연간 약 4억 714만 곡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파일 유통은 주로 렌탈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음반사와 경찰이 함께 저작권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적 조치도 과감하게 이루어져, 기존의 경고 조치와 함께 악법의 여지가 큰 경우는 법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3월 파일공유프로그램 Win MX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파일 등을 업로드한 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여 총 5백 38만 엔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불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4개월 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약 150 여곡의 음악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법적 소송에 따른 결과이다. 이 외에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권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고 부정 업로드한 18명에게는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각각 10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의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일본레코드협회는 2004년 3월 이래 Win MX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약 1,220만 통이 넘는 경고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법적 조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800건이 넘는 대량 불법 음악파일이 업로드 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각 단체별로 이루어져 왔던 불법 음악에 대한 대책을 각 단체와 관련 업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네트워크 음악저작권협회 등은 3월 6일 인터

넷음악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정보 관리를 일원화한 '저작권 정보 집중처리기구'를 설립했다. 일본의 온라인 음악 사업자는 약 1,000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약 10,000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의 정보를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작권 정보 집중처리기구'의 설립으로 단속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집중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권리 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 정보 집중 처리기구'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99.9%의 음원에 관한 악곡 정보를 Finger Print 기술을 이용해 등록하고 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악곡이 이용되었을 경우 사용한 악곡에 대한 정보가 음반사와 음원 관리자에게 전송된다.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일본레코드협회, 일본국제영화저작권협회가 2009년 9월에 실시한 '파일공유소프트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현 이용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9.1%로 2008년의 10.3%보다 줄어들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용률 저하의 요인으로는 2009년 6월 12일 성립한 개정저작권법(2010년 1월 1일 시행)개정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 일본 콘텐츠 기업 해외전개를 위한 관민공동 펀드 창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하토야마 총리)가 완성한 「지적재산추진계획2010」의 주요 내용이 2010년 3월에 발표 되었다. 주요 내용은 음악, 애니메이션, 영상 등 일본 콘텐츠산업에 대하여 기업의 해외전개를 지원하는 100억 엔 규모의 관민공동 펀드를 창설한다는 내용이다.

계획에서는 우선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에 가장 큰 기대를 두면서 일본 콘텐츠산업의 해외수입을 1조 엔(2008년 집계)에서 2020년에 2.5조 엔까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전개 자금을 공급하는 100억 엔 규모의 관민출자 즉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출자를 추진하고 펀드를 활용해서 아시아에서 방송되는 일본 프로그램 지분을 확보, 콘텐츠 유통회사 매입으로 해외유통경로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작비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우대세제는 영화, TV프로그램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로케이션 장소를 일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촬영을 할 때, 대도시 촬영이 어려울 경우 촬영허가절차를 간소화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향후 3-4년에 걸쳐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제작 협정 체결등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음악산업과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 규모는 1.4조 엔(2009년 집계)에서 2020년까지 약 3배를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며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기술이 세계표준이 되도록 하기위한 '국제표준화'도 추진 중에 있다.

표 5-3-1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주요 검토 항목

항목	내용
1.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개지금을 공급하는 펀드 창설 • 국제공동제작 및 촬영유치를 위해, 국내 제작비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우대세제 창설 • 저작물을 보호하는 액세스 콘트롤의 회피규제 강화
2. 국제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및 환경 등 특정전략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포함한 지적매니지먼트 전략 책정 • 아시아 각국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차년도중에 계획해서 조속히 구축
3.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공적연구기관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가출액(假出額)제도의 도입 등 특허제도의 재검토 • 산학관(産學官) 제휴 매칭펀드의 창설 및 세계상의 우대조치 확충 등 예산·세제의 근본적 재검토

제2절 중국

1. 음악산업 수입규제 강화

2009년 9월 중국 국무원의 <문화산업진흥계획>은 중국 최초의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강령이자 문화가 산업 사이클을 통해 유통, 소비되는 현상을 원자바오 총리에 의해 전격 발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계획>의 전문은 “오늘날 국제금융 위기라는 새로운 정세와 문화 영역의 개혁 및 발전이라는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제정 한다”고 언급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의 공익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계획>의 문화사업 중점 8가지 중 한 가지 사항은 대외 문화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장려하고 지지할 것에 관한 국가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시장개척, 기술혁신, 세관통관 등의 분야에서 대외문화 무역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민족특색을 지닌 문화예술, 전시 전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출판물, 민족음악무도와 서커스 등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수입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악산업에 관한 법적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3-2 음악산업 관련 수입규제 현황

구분	관련 정책	내용
판매/유통	수입허가제	신문출판총서에서 CD 및 DVD 출간에 대해 심사를 통한 허가
	문화상품 수입관련영허가증 제도	CD, DVD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획득한 중국기업만 가능
라이선스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	인터넷을 통한 음악 서비스사업 분야에 외자 개입 불가
	ICP 허가증	모바일을 통한 음악 서비스사업 분야에 외자 개입 불가
투자	문화영역 외자도입에 관한 의견	전자출판 출판사의 외자 개입 불가(CD, DVD포함)

음악산업 관련 수입규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판매/유통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음악 콘텐츠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 내에서 문화상품을 통한 경영은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획득한 중국기업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모든 모바일 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업에 외자 기업은 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투자 분야에서도 외자 기업은 개입할 수 없다.

강력해진 수입규제 대응 방안으로는 현지 파트너(포털, 국유기업 등)와의 자본 합작과 사업제휴를 통한 현지 유통 방안 추진, 드라마 OST 중심의 디지털 음원사업 진출을 들 수 있다. 또한 한류와 관련한 아이돌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저작권 투·융자 10억 위안규모 투입

중국은 향후 지적재산권 평가기구, 담보, 저당설정, 투자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형재산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2회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에서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의 문화창의산업에서 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국제 저작권 교육센터 기구는 현재 여러 기구와 합작하여 전문 저작권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중이며 총 10억 인민폐 규모로 조성될 것이다. 이 자금은 향후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등 여러 분야의 저작권 관련 산업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번 저작권 산업을 위한 기금 조성은 향후 중국 내 저작권 산업의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창작자를 고무시켜 보다 좋은 작품을 창작케 하고 소비자의 문화소비 욕구를 증진시키는 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작권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 연구 조직, 평가기구 형성 및 체제구축, 금융 기구와의 협력이 향후 저작권 산업 발전과 보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3절 미국

1. Coachella Valley Music Festival 활성화

미국은 모든 콘텐츠 사업을 Commercial Creative Industry와 동일시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적인 정책과 지원은 전무하나 연방과 주 자체적으로 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는 Festival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0년 4월 캘리포니아 Indio의 Empire Polo Club에서 Coachella valle Music and

Arts Festival(이하 Coachella)이 열렸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총 5개의 무대에서 Jay-Z, Muse, Gorillaz, Pavement 등 정상급 뮤지션들의 공연이 총 128회 열렸다. Coachella는 1999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 Coachella는 8만 장에 이르는 3-day pass가 매진되었으며, 일일 평균 관람객 수가 7만 5천명에 이르는 등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Coachella는 민간 기업과 캘리포니아주가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는 문화적 콘텐츠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스폰서를 최소화 하고 민간 기업이 주가 되어 추진되고 실행된다. 특히 Coachella에서는 락을 기본 연주로 하되 최근에는 Indie 음악 성향이 가미되고 있으며 기획 초기부터 세계 최고의 락 음악 페스티벌로 평가되는 영국의 Glastonbury Festival을 벤치마킹했다.

Coachella는 공연 형식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주 수입원은 티켓 판매이며, 2010년 페스티벌의 경우 3일 패스가 285불에 판매되었고 총 수입은 2천 2백 8십만 불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5-3-1 Coachella Valley Music Festival



출처 : <http://crobaralf.wordpress.com/category/uncategorized/>

2. 불법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강력 조치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불법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미국 법원의 강력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음악시장의 난제로 여겨졌던 '불법 음악파일' 공유는 모바일 폰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 되었다. 불법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불법 음악파일 공유가 끊이지 않자 저작권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불법 다운로드와 음악파일 공유를 둘러싼 소송을 인터넷 상으로 생중계 하는 등 불법 음악파일 공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권리, 저작권 및 공연권에 대한 과금 등이 강화되면서 음악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음악 저작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음악 스트리밍이 가능한

모델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 역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됨에 따른 결과이다. 현재 미국 내 음악공연권 및 로열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Sound Exchange' 로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제4절 유럽

1. 영국 디지털 보호 법안 강화

2010년 4월 페이스북(Face Book)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웹 사이트들과 20,000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큰 논란이 되어 온 웹 사이트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이제 영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더 높게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과 연결된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디지털 산업은 이런 법적 적용 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사이트(예: 위키리크스(Wikileaks), 유튜브(Youtube))들도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음악산업협회(BPI)와 NBC 유니버설 등 다수의 스튜디오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3월에 영국의 주요 브로드밴드 그룹인 톡톡(Talk Talk),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페이스북(Facebook), 이베이(Ebay) 그리고 구글(Google)은 위와 같은 사이트 차단 법안이 인터넷의 고유 특징인 자유적인 정보 공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장관에게 전했다. 또한 5월 6일 총선거 전에 이 법안의 법적 효과 적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의 자세한 검토와 예상 결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운 바 있다. 테크 크런치 유럽(Tech Crunch Europe) 웹사이트의 에디터인 마이크 버처(Mike Butcher)는 작년 저작권 보호법의 통과로 인터넷 트래픽의 암호화 급증을 경험하고 있는 스웨덴을 적절한 예로 제시하면서 이 법안이 뜻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저작권 보호 법안 통과를 로비하는 것이 결국 추적이 불가능한 파일 공유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2. 영국음악 저작권협회의 3가지 임무

영국음악저작권협회(PRS For Music, 이하 PRS)의 대표인 로버트 아쉬크로프트(Robert Ashcroft)는 가장 최근에 조정되는 개발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음악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그림 5-3-2 영국음악 저작권 협회 로고



아쉬크로프트는 라이선싱과 운영전문이라는 두 개의 부서를 만들어 현재 3개의 주요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주요 연구,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공공 사회에게 음악저작권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PRS의 대표는 영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음악산업의 발전과 후원을 위해서 하는 일을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영국의 음악 미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점을 사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 했다. 이 임무의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미용사, 자동차 수리공 등 영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고객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공공 사회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는 모든 기관들은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기관이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할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임무로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돕기 위해 더 엄격한 법안과 유럽 국가들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이전에 디지털 서비스를 론칭 한 바 있는 이 기관의 대표는 저작권 침해 해결 방안에 새로운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음악 저작권협회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원하는 요구 수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 두 부분들은 정당하고 이상적인 관계에 있기 어렵기 때문에 아쉬크로프트는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막고 더 많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론칭 하기 위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더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 임무로 영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표는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범 유럽의 라이선스 구매 절차를 원스톱 쇼핑으로 간단하게 최소화시키고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의 Sacem(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의 다른 기관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음악저작권협회는 Sacem과 함께 작업하면서 라이선시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유럽 게임 음악 규정

유럽의 음악산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협회들은 수입 창출의 가능성을 게임 산업으로 판단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게임 산업 붐이나 수천만 달러 수입을 창출한 록밴드 게임 프랜차이즈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 내 수록된 음악 관련 라이선스를 누가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허가해 주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유럽 시장에 분분한 가운데 그 권한이나 비용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생길 경우 유럽 내 많은 송 라이터들은 발언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이선스 과정은 이론적으로 단순하지만 영화와 음악이 결합된 형태인 비디오 게임 관련 라이선스는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세계 주요 게임 시장인 영국과 미국은 이들 나라는 게임라이선스 관례를 형성해 여타 유럽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게임음악은 게임만을 위해 창작된 오리지널 음악, 프로덕션 음악 그리고 시장에 유통된 상업 음악 등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 음악 라이선싱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영화산업에 일반적인 방식인 게임 회사가 작곡을 의뢰해 전 세계 연주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 음악은 회원들을 대신해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는 PRS 같은 협회나 프로덕션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덕션 사들은 음악 관련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가끔 작곡자가 연주 관련 권리를 소유하는 예가 있고 이러한 경우 게임 회사가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대중관련 공연 형태를 취할 경우 노출되는 각 지역의 라이선스를 각각의 협회 등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업음악 라이선스는 훨씬 더 복잡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송 라이터들의 리프로덕션 권리를 대부분 소유한 출판사들이 게임 회사들과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sync 비용, 각각의 판매나 배급 관련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고 영화산업과 동일하게 라이선스 체결 후 전 세계 배급이 자유로워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 ASCAP, BMI, SESAC 등의 협회들은 비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 게임 회사들과 출판사간의 직접 계약이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각 지역 협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하며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각국에 자회사가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자회사가 총괄 하고 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세부적이지 않은 계약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sync 권리는 없고 리프로덕션 권한으로 문제를 압축하는데 이러한 해석

은 출판사들이 비디오 게임용 상업 음악 라이선스에 관여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관련 협회가 리프로덕션 관련 권한을 가지게 만들었다. 많은 출판 관련자들은 협회 측을 게임 관련 수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데 출판사 측이 게임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적정 가격을 조정하는데 협회의 경우 모든 작곡가에게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관례가 있다.

이러한 관례가 송 라이터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작곡가와 출판사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협회와의 가격 대립 문제로 인해 전 세계 배급 전에 게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협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작곡가들도 있는 상황이다. 현 카피라이터 법에는 실제적으로 sync 권리 관련 조항은 없지만 개작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링톤 역시 개작의 범위 안에 포함한다는 관례가 있다. 독일 협회인 GEMA에는 작곡가의 동의 없이 링톤 개작을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허가해주는 조항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는 각 협회의 동의 계약서에 따라 결정된다. 긍정적 시각으로 협회 측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게임 회사들로부터 약자인 작곡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지만 협회 측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대 해석해 출판업자들과 동격으로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럽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내 권리만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사례들도 있다. 협회 측은 리프로덕션 라이선스를 작곡가들이 협회에 넘기는 일반적 관례를 예로 들며 출판업자들의 움직임을 행동반경을 벗어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 소유권 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0 음악산업백서

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1. 음악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2. 2009년도 및 2010년 상반기 분야별 TOP 30 현황
3. 음악 우수 신인 발굴 프로그램 루키 현황
4. 2009년 음악산업 국내·외 주요 행사 현황
5. 음악 콘텐츠 계약매뉴얼 (수출 분야)
6.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Appendix

1. 음악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관련기관		
기관	홈페이지	주소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www.busanit.or.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www.cjculture.org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96
(재)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www.ctia.kr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 영상관 6층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www.cit.or.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화로 71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www.gdca.or.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크II 202동 9층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www.jejukipa.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15-14번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www.gimc.or.kr	강원 춘천시 후평동 강변로 50 하이테크벤처타운 M102
목포벤처지원센터	www.mokposoftware.com	전남 목포시 석현동 1175
(재)광주정보문화진흥원	www.gilt.or.kr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24층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or.kr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139-12번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www.djacts.kr	대구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인천정보산업진흥원	www.iitpa.or.kr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592-5 인천T타워 20층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www.jcia.or.kr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관련단체		
기관	홈페이지	주소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3 홍우빌딩 508-A호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상암동 1602) 문화콘텐츠센터 10층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8-10 올림피아센터 1020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www.krtra.or.kr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1-4 대한빌딩 4층
한국연예제작자협회	www.kepa.ne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16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창동 260-15 도레미빌딩 7층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www.kmcia.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83-2 제우피스빌딩 8층
한국음악협회	www.mak.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 403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동 649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5-27 서원빌딩 3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층,7층

2. 2009년도 및 2010년 상반기 분야별 TOP30 현황

TOP 30 국내음반					
연도	순위	앨범 및 가수	출시일	유통사	누적판매량
2009	1	슈퍼주니어 3집	2009-08-21	SM Entertainment	225,104
	2	지드래곤 1집	2009-08-21	엠넷미디어	209,692
	3	2NE1 미니앨범	2009-07-08	엠넷미디어	123,617
	4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2009-01-07	SM Entertainment	119,198
	5	소녀시대 미니앨범 2집	2009-06-30	SM Entertainment	118,630
	6	꽃보다 남자 ost	2009-01-21	KT 뮤직	101,787
	7	2pm 싱글 2집	2009-04-23	로엔엔터테인먼트	89,206
	8	2pm 1집	2009-11-12	로엔엔터테인먼트	79,435
	9	드림큰 타이거 8집	2009-06-29	엠넷미디어	72,848
	10	SG 워너비 6집	2009-04-23	엠넷미디어	67,648
	11	샤이니 미니앨범 2집	2009-05-25	SM Entertainment	67,007
	12	샤이니 미니앨범 3집	2009-10-22	SM Entertainment	61,968
	13	빅뱅 라이브 콘서트	2009-04-21	엠넷미디어	58,012
	14	동방신기 3rd 아시아투어 라이브 콘서트	2009-07-30	SM Entertainment	57,468
	15	바비킴 미니앨범	2009-01-12	KT 뮤직	56,799
	16	이승철 10집	2009-05-06	엠넷미디어	47,808
	17	에픽하이 6집	2009-09-16	엠넷미디어	47,803
	18	박효신 6집	2009-09-15	엠넷미디어	41,619
	19	리쌍 6집	2009-10-06	로엔엔터테인먼트	41,460
	20	SS501 스페셜 한정반	2009-10-21	엠넷미디어	38,899
	21	꽃보다 남자 ost Part2	2009-03-23	KT 뮤직	38,729
	22	티아라 1집	2009-12-04	엠넷미디어	38,000
	23	SS501 스페셜 일반반	2009-10-22	엠넷미디어	36,980
	24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2009-08-31	엠넷미디어	36,374
	25	FT아일랜드 3집	2009-07-16	엠넷미디어	34,121
	26	브라운 아이드 걸스 3집	2009-07-20	엠넷미디어	34,103
	27	조성모 7집	2009-04-09	엠넷미디어	30,737
	28	엠씨몽 5집	2009-07-23	엠넷미디어	26,536
	29	이선희 14집	2009-02-25	엠넷미디어	24,653
	30	카라 2집 일반반	2009-07-30	엠넷미디어	24,370
2010 상반기	1	슈퍼주니어 (Super Junior) - 미인아 (BONAMANA) The 4th Album	2010-05-13	SM Entertainment	199,600
	2	소녀시대 - The Second Album 'Oh!	2010-01-28	SM Entertainment	170,998
	3	소녀시대 - Run Devil Run The 2nd Album (Repackage)	2010-03-16	SM Entertainment	95,028
	4	슈퍼주니어 (Super Junior) - The 4th Album Repackage '미인아'	2010-06-28	SM Entertainment	83,070
	5	SS501 - Mini Album Destination (EP)	2010-05-26	엠넷미디어	61,489
	6	2am - Mini Album '죽어도 못 보내'	2010-01-27	로엔엔터테인먼트	53,818
	7	비 - Back To The Basic	2010-04-06	엠넷미디어	52,126
	8	2pm - 3rd Single Dont Stop Cant Stop	2010-04-22	로엔엔터테인먼트	48,849
	9	비스트 (Beast) - Shock Of The New Era	2010-03-02	Universal Music	47,546
	10	씨엔블루 (CNBLUE) - Mini Album 1집 'Bluetory'	2010-01-14	엠넷미디어	45,147
	11	카라 (KARA) - 3rd Mini Album '루팡 (Lupin)'	2010-02-17	엠넷미디어	41,646
	12	씨엔블루 (CNBLUE) - 2nd Mini Album 'Bluelove'	2010-05-18	엠넷미디어	36,600
	13	이효리 - 4집 H-Logic	2010-04-08	엠넷미디어	35,889
	14	G-Dragon 콘서트 라이브앨범 'Shine A Light'	2010-03-24	엠넷미디어	33,621
	15	2pm - 1집 1:59PM / Heartbeat	2009-11-12	로엔엔터테인먼트	29,792
	16	2am - 잘못했어 (Mini Album Repackage)	2010-03-17	로엔엔터테인먼트	27,891
	17	태양 - 1집 Solar	2010-06-30	엠넷미디어	27,000
	18	에픽하이 (Epik High) - Epilogue / Run	2010-03-08	엠넷미디어	25,975
	19	원더걸스 (Wonder Girls) - 2 Different Tears	2010-05-17	로엔엔터테인먼트	24,286
	20	Verandah Project - 1집 Day Off	2010-05-17	엠넷미디어	24,069
	21	동방신기 - O -正反面. (정반합)	2006-09-22	SM Entertainment	23,772
	22	2NE1 - 1st Mini Album	2009-07-07	엠넷미디어	23,361
	23	이승철 25주년 기념 앨범	2010-05-03	엠넷미디어	22,621
	24	붉은악마 4번째 응원 앨범 'The shouts of Reds'	2010-04-05	KT 뮤직	21,946
	25	티아라 (T-ara) - Breaking Heart (Repackage)	2010-03-03	엠넷미디어	20,916
	26	G-Dragon - 1집 Heartbreaker	2009-08-19	엠넷미디어	20,805
	27	바비킴 (Bobby Kim) - 3집 Heart & Soul	2010-04-26	KT 뮤직	20,636
	28	엠블랙 (MBLAQ) - 2nd Single 'Y'	2010-05-17	엠넷미디어	20,381
	29	김종국6집 - Eleventh Story	2010-01-27	로엔엔터테인먼트	19,329
	30	빅뱅 2010 빅뱅 콘서트 라이브 앨범 'Big Show'	2010-06-22	엠넷미디어	19,275

자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제공자료 편집

TOP 30 국외음반					
연도	순위	앨범 및 가수	출시일	유통사	누적판매량
2009	1	Mamma Mia! OST	2008-07-08	Universal Music	43,804
	2	Michael Jackson - King Of Pop (Korean Limited Edition)	2008-12-09	Sony Music	39,648
	3	Yuna Kim : Fairy On The Ice	2008-12-09	Universal Music	33,720
	4	Black Eyed Peas - THE E.N.D.	2009-06-09	Universal Music	29,343
	5	Lady GaGa - The Fame (New Version)	2009-02-12	Universal Music	27,542
	6	MAX 16	2009-07-07	Universal Music	23,569
	7	Eminem - Relapse (Explicit Version)	2009-05-19	Universal Music	22,014
	8	FAIRY ON THE ICE HAUSEN	2009-03-13	Universal Music	22,000
	9	Beethoven Virus	2008-10-02	Universal Music	20,829
	10	MIKA - The Boy Who Knew Too Much	2010-05-27	Universal Music	20,409
	11	BEST CLASSICAL MUSIC FOR	2009-08-26	Universal Music	20,000
	12	Richard Yongjae O'Neill - Mysterioso	2008-12-18	Universal Music	18,948
	13	Ensemble Ditto - Ditto Carnival	2009-05-13	Universal Music	18,813
	14	Andrea Bocelli - Vivere (Live In Tuscany)	2008-03-04	Universal Music	16,436
	15	JAZZ FOR EASY DRIVING	2008-11-03	Universal Music	14,392
	16	Richard Yongjae O'Neill - Lachrymae (Repackage)	2006-12-12	Universal Music	14,209
	17	Jason Mraz - We Sing, We Dance, We Steal Things.	2008-05-22	Warner Music	13,596
	18	Fairy On The Ice: The Pop Album	2009-08-11	Universal Music	13,595
	19	NOTRE DAME DE PARIS (KOREAN)	2008-01-17	Universal Music	12,788
	20	The Phantom Of The Opera OST	2006-01-10	Universal Music	12,597
	21	Beethoven Virus 2	2008-11-13	Universal Music	12,535
	22	Michael Jackson - Michael Jackson's This Is It	2009-10-26	Sony Music	11,680
	23	Michael Jackson & Jackson 5 - The Motown Years 50	2009-01-08	Universal Music	11,564
	24	MOZART FAVORITES	2005-10-26	Universal Music	11,500
	25	Mariah Carey - Memoirs of an Imperfect Angel	2009-09-28	Universal Music	11,468
	26	ABBA - The Definitive Collection	2001-11-08	Universal Music	11,160
	27	Paul Potts - Passione	2009-04-30	Sony Music	10,686
	28	Classic Maestro	2008-12-26	Warner Music	10,087
	29	Once OST	2007-08-14	Sony Music	10,002
	30	111YEARS THE COLLECTORS	2009-09-22	Universal Music	9,980
2010 상반기	1	동방신기 - Best Selection 2010	2010-03-04	SM Entertainment	20,589
	2	아이리스 OST (일본발매)	2010-04-29	엠넷미디어	15,000
	3	Living Stereo Box	2010-05-25	Sony Music	9,410
	4	동방신기 - 일본싱글 29집 Break Out!	2010-02-10	SM Entertainment	7,979
	5	Richard Yongjae O'Neill - NORE	2010-03-15	Universal Music	7,733
	6	B.o.B - The Adventures Of Bobby Ray (Korean Special Edition)	2010-06-24	Warner Music	7,173
	7	Jason Mraz - We Sing, We Dance, We Steal Things. (Limited Edition)	2009-03-17	Warner Music	6,916
	8	Usher - Raymond V Raymond	2010-04-26	Sony Music	6,396
	9	Susan Boyle - I Dreamed A Dream	2009-11-24	Sony Music	5,848
	10	Chopin 200th Anniversary	2009-12-08	Sony Music	5,759
	11	Michael Jackson - King Of Pop	2008-12-09	Sony Music	5,573
	12	Jason Mraz - We Sing, We Dance, We Steal Things. (International)	2008-05-22	Warner Music	5,536
	13	Amerie - In Love & War (Korea Edition)	2010-02-25	Universal Music	5,388
	14	2010 Grammy Nominess	2010-01-19	Warner Music	5,094
	15	동방신기 - 일본싱글 30집 時ヲ止メテ (시간을 멈춰서) (CD)	2010-03-31	SM Entertainment	4,948
	16	LadyGaGa - The Fame Monster (International Deluxe)	2009-11-24	Universal Music	4,887
	17	보아(BoA) - 일본정규7집 Identity	2010-02-17	SM Entertainment	4,143
	18	Ke\$ha - Animal	2010-01-05	Sony Music	4,121
	19	Once OST	2007-08-14	Sony Music	4,094
	20	Music Camp (배철수의 음악캠프 1960-1970년대 대표곡)	2009-05-25	Warner Music	4,077
	21	Mamma Mia! OST	2008-07-08	Universal Music	4,073
	22	Music Camp (배철수의 음악캠프 1980-1990년대 대표곡)	2009-05-21	Sony Music	3,920
	23	F.T Island - Flower Rock	2010-06-22	Warner Music	3,702
	24	FreeTEMPO - Life	2010-04-07	엠넷미디어	3,676
	25	The Beatles - 1	2008-09-22	Warner Music	3,559
	26	Oasis - Time Flies... 1994-2009	2010-06-15	Sony Music	3,499
	27	Oasis -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	2006-05-16	Sony Music	3,389
	28	F.T Island - Japan Special Album Vol.1	2010-04-08	KT 뮤직	3,292
	29	Corinne Bailey Rae - The Sea	2010-02-01	Warner Music	3,256
	30	Best Of The Best POP Vol.2	2007-08-16	Sony Music	3,145

자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제공자료 편집

TOP 30 온라인 국내					
연도	순위	곡명	아티스트	유통사	제작사
2009	1	Gee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2	I Don't Care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3	Abacadabra	브라운 아이드 걸스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4	Heartbreaker	G-Dragon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5	소원을 말해봐 (Genie)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6	Fire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7	사랑비	김태우	로엔터테인먼트	플라리스
	8	쏘리 쏘리 (Sorry, Sorry)	슈퍼주니어(Super Junior)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9	Again & Again	2pm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10	Lollipop	빅뱅 &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11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Feat. 정인)	리쌍	로엔터테인먼트	정글엔터테인먼트
	12	외톨이	아웃사이더	포니캐년코리아	포니캐년코리아
	13	TTL (Time To Love)	티아라 & 초신성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14	You And I	박봄	다날	YG 엔터테인먼트
	15	내 귀에 캔디 (Feat. 택연 Of 2pm)	백지영	로엔터테인먼트	WS뮤직
	16	8282	다비치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7	잊지 말아요	백지영	엠넷미디어	태원ent
	18	Hot Issue	4minute (포미닛)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9	심장이 없어	에이트 (8eight)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0	토요일밤에	손담비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1	사랑한 후에	박효신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2	결혼해줄래 (Feat. Bizniz)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23	미스터	카라 (KARA)	엠넷미디어	디에스피미디어
	24	Wanna	카라 (KARA)	엠넷미디어	디에스피미디어
	25	Muzik	4minute (포미닛)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6	여성시대	씨야 & 다비치 & 티아라	KT 뮤직	도레미 미디어
	27	Ring Ding Dong	샤이니 (SHINee)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28	Indian Boy (Featuring 장근이, B.I)	MC 몽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9	거짓말 (Part.1)	티아라 (T-ara)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30	우리헤어지자	이승기	로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2010 상반기	1	Oh!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2	죽어도 못 보내	2am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3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T-ara)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4	루팡 (Lupin)	카라 (KARA)	엠넷미디어	디에스피미디어
	5	널 붙잡을 노래	비 (Rain)	엠넷미디어	제이툰엔터테인먼트
	6	못해 (Feat. 美)	포맨 (4Men)	Sony Music	YWHO Enterprise
	7	고백	뜨거운 감자	Universal Music	다음기획
	8	2 Different Tears	원더걸스(Wonder Girls)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9	Run Devil Run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0	시간아 멈춰라	다비치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11	뱅 (Bang) !	애프터스쿨(After School)	로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 로엔터테인먼트
	12	외톨이야	씨엔블루 (CNBLUE)	엠넷미디어	F&C Music
	13	잘못했어	2am	로엔터테인먼트	JYP & Big Hit Ent
	14	Bubble Love	MC 몽 & 서인영	KT 뮤직	넥스타엔터테인먼트
	15	Chitty Chitty Bang Bang (Feat. Ceejay Of Freshboyz)	이효리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6	Magic	시크릿 (Secret)	로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17	사랑이 술을 가르쳐 (Feat. 백찬 From 8eight)	이승기	로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18	너 아니면 안돼	슈퍼주니어 예성	포니캐년코리아	에이스토리
	19	NU 예뻐오 (NU ABO)	f(x)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20	Love	씨엔블루 (CNBLUE)	엠넷미디어	F&C Music
	21	Without U	2pm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22	Shock	비스트 (Beast)	Universal Music	플레이큐브
	23	이 거짓같은 말 (with 정엽 of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서영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이제이홀릭미디어
	24	홀어저	몬데이 키즈 (Monday Kiz)	엠넷미디어	유니온켄
	25	진소리 (With 2am 슬웅)	아이유 (IU)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6	사랑해 U	서인국	엠넷미디어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27	비켜줄게	브라운 아이드 소울 (Brown Eyed Soul)	엠넷미디어	인넥스트 트렌드
	28	배운게 사랑이라	디셈버 (December)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29	HUH	4minute (포미닛)	Universal Music	플레이큐브
	30	Change (Feat. 용준형 From BEAST)	현아	Universal Music	플레이큐브

TOP 30 온라인 국외					
연도	순위	곡명	아티스트	유통사	제작사
2009	1	Boom Boom Pow	Black Eyed Peas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	What You Do (Feat. Ne-Yo)	Chrisette Michele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3	Honesty	Beyonce	Sony Music	Sony Music
	4	3	Britney Spears	Sony Music	Sony Music
	5	Insomnia	Craig David	Warner Music	Warner Music
	6	Love Sex Magic (Feat. Justin Timberlake)	Ciara	Sony Music	Sony Music
	7	Girls (Featuring Lil Kim)	세븐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8	We Made You	Eminem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9	Mad	Ne-Yo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0	Slow Motion	Karin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1	Poker Face	Lady GaG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2	So Sick	Ne-Yo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3	Eat You Up	보아 (BoA)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4	I Did It For Love (Featuring Sean Garrett)	보아 (BoA)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5	Take A Bow	Rihann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6	Angels Cry	Mariah Carey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7	Circus	Britney Spears	Sony Music	Sony Music
	18	Brave	Jennifer Lopez	Sony Music	Sony Music
	19	Lucky (Feat. Colbie Caillat)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20	Sugar (Feat. Wynter)	Flo Rida	Warner Music	Warner Music
	21	My Heaven	빅뱅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22	I Want To Know What Love Is	Mariah Carey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3	New Divide (트랜스포머 : 패자의 역습 주제곡)	Linkin Park	Warner Music	Warner Music
	24	Never Knew I Needed	Ne-Yo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5	Echo	Ciara	Sony Music	Sony Music
	26	Baby By Me (Feat. Ne-Yo)	50Cent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7	Number One (Featuring Keri Hilson)	R. Kelly	Sony Music	Sony Music
	28	Kiss Me Thru The Phone (Feat. Sammie)	Soulja Boy Tellem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9	Right Round (Feat. Ke\$ha)	Flo Rida	Warner Music	Warner Music
	30	Papers	Usher	Sony Music	Sony Music
2010 상반기	1	Nothin On You (Feat. Bruno Mars)	B.o.B	Warner Music	Warner Music
	2	Tik Tok	Ke\$ha	Sony Music	Rca Records Label
	3	Telephone (Feat. Beyonce)	Lady GaG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4	Nothin On You (Feat. 재범)	B.o.B	Warner Music	Warner Music
	5	Baby (Feat. Ludacris)	Justin Bieber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6	Shots (Feat. Lil Jon)	LMFAO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7	Honesty	Beyonce	Sony Music	Sony Music
	8	Blah Blah Blah (Feat. 3OH!3)	Ke\$ha	Sony Music	Sony Music
	9	Slow Motion	Karin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0	Im Yours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11	Poker Face	Lady GaG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2	3	Britney Spears	Sony Music	JIVE
	13	Airplanes (Feat. Hayley Williams of Paramore)	B.o.B	Warner Music	Warner Music
	14	Not Afraid	Eminem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15	Geek in the Pink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16	Falling Slowly	Glen Hansard & Marketa Irglova	Sony Music	Sony Music
	17	Tell Me Goodbye	빅뱅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18	Lucky (Feat. Colbie Caillat)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19	Umbrella (Single Ver.) (MTV 더 힐스 삽입곡)	Marie Digby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0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	The Chipmunks	Sony Music	Sony Music
	21	Boom Boom Pow	Black Eyed Peas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2	Fine	Tiago Iorc	스톤미디어	강원뮤직
	23	Take A Bow	Rihanna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4	So Sick	Ne-Yo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5	Angels Cry (Remix) (Feat. Ne-Yo)	Mariah Carey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26	In My Head	Jason Derulo	Warner Music	Warner Music
	27	Empire State Of Mind (Feat. Alicia Keys)	Jay-Z	Warner Music	Warner Music
	28	Not Myself Tonight (Super Clean Ver.)	Christina Aguilera	Sony Music	Rca Records Label
	29	Love The Way You Lie (Feat. Rihanna)	Eminem	Universal Music	Universal Music
	30	Chronic Intoxication (Ryoko Anan Natsu No Yuki Remix)	Nieve & Cook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Go Music

자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제공자료 편집

TOP 30 모바일 통화연결음					
연도	순위	곡명	아티스트	유통사	제작사
2009	1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	있지 말아요	백지영	엠넷미디어	태원ent
	3	결혼해줄래 (Feat. Bizniz)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4	여성시대	씨야 & 다비치 & 티아라	KT 뮤직	도레미 미디어
	5	사랑비	김태우	로엔터테인먼트	플라리스
	6	I Dont Care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7	술 한잔 해요	지아 (Zia)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8	Gee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9	사랑해 (Featuring 유리상자 박승화)	SG 워너비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0	너 때문에	애프터스쿨(After School)	로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11	소원을 말해봐 (Genie)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2	TTL (Time To Love)	티아라 & 초신성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13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다날	코어콘텐츠미디어
	14	사랑이 죄인가요	백지영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5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KT 뮤직	KT 뮤직
	16	사랑한다 말 못해	옥주현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7	Im Yours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18	Lucky (Feat. Colbie Caillat)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19	꿈을 꾸다 (Main Ver.)	김태우	엠넷미디어	태원ent
	20	You And I	박봄	다날	YG 엔터테인먼트
	21	사랑 참...	디셈버 (December)	로엔터테인먼트	해피 엔터테인먼트
	22	Abracadabra	브라운 아이드 걸스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3	토요일밤에	손담비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4	사랑 그놈	바비 킴 (Bobby Kim)	KT 뮤직	KT 뮤직
	25	사고쳤어요	다비치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6	냉면	명카 드라이브 (박명수, 제사카, 이트라이브)	KT 뮤직	KT 뮤직
	27	그대라서	거미	로엔터테인먼트	아이에이치큐
	28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가인 & 조권	로엔터테인먼트	내가 네트워크
	29	못된 여자 II (With 서인영)	원투 (One Two)	엠넷미디어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30	한사람을 위한 마음	클럽피쉬	네오위즈인터넷	네오위즈인터넷
2010 상반기	1	밤하늘의 별을... (with KCM & No Noo)	양정승 (KiroY Y)	에이앤지모즈	홍양미디어
	2	죽어도 못 보내	2am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3	너 아니면 안돼	슈퍼주니어 예성	포니캐년코리아	에이스토리
	4	고백	뜨거운 감자	Universal Music	다음기획
	5	Bubble Love	MC 몽 & 서인영	KT 뮤직	넥스타엔터테인먼트
	6	자기가 여보야 사랑아	린 (LYn)	KT 뮤직	라이브웍스컴퍼니
	7	시간아 멈춰라	다비치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8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가인 & 조권	로엔터테인먼트	내가 네트워크
	9	외톨이야	씨엔블루 (CNBLUE)	엠넷미디어	F&C Music
	10	낙인	임재범	포니캐년코리아	포니캐년코리아
	11	Oh!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2	이 사람이다	김종국	로엔터테인먼트	원오원
	13	선물 (Feat. 은지원)	케이윌 (K.Will)	로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14	원더우먼	씨야 & 다비치 & 티아라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15	널 붙잡을 노래	비 (Rain)	엠넷미디어	제이투엔터테인먼트
	16	사랑 빛	씨엔블루 (CNBLUE)	엠넷미디어	F&C Music
	17	배운게 사랑이라	디셈버 (December)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18	널 위한 멜로디	M4	비타인 엔터테인먼트	제이제이홀릭미디어
	19	Tik Tok	Ke\$ha	Sony Music	Rca Records Label
	20	Nothin On You (Feat. Bruno Mars)	B.o.B	Warner Music	Warner Music
	21	사랑이 술을 가르켜 (Feat. 백찬 From Beight)	이승기	로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22	가슴이 뭉클	씨야 (SeeYa)	로엔터테인먼트	이김프로덕션
	23	사랑이올까요	마이티마우스 & 백지영	엠넷미디어	원오원
	24	잔소리 (With 2am 송용)	아이유 (IU)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5	술 한잔 해요	지아 (Zia)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6	Honesty	Beyonce	Sony Music	Sony Music
	27	귀여운 년	애프터스쿨(After School)	네오위즈인터넷	풍년엔터테인먼트
	28	Im Yours	Jason Mraz	Warner Music	Warner Music
	29	못해 (Feat. 美)	포맨 (4Men)	Sony Music	YWHO Enterprise
	30	말도 안돼	윤하	로엔터테인먼트	이김프로덕션

TOP 30 모바일 벨소리					
연도	순위	곡명	아티스트	유통사	제작사
2009	1	잊지 말아요	백지영	엠넷미디어	태원Ent
	2	Gee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3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4	여성시대	씨야 & 다비치 & 티아라	KT 뮤직	도레미 미디어
	5	투요일밤에	손담비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6	사랑비	김태우	로엔터테인먼트	플라리스
	7	결혼해줄래 (Feat. Bizniz)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8	I Dont Care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9	내 머리가 나빠서	SS501	KT 뮤직	KT 뮤직
	10	Abacadabra	브라운 아이드 걸스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11	쓰리 쓰리 (Sorry, Sorry)	슈퍼주니어(Super Junior)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2	TTL (Time To Love)	티아라 & 초신성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13	Hearbreaker	G-Dragon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14	Bo Peep Bo Peep	티아라 (T-ara)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15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다날	코어콘텐츠미디어
	16	너 때문에	애프터스쿨(After School)	로엔터테인먼트	플레디스
	17	Lollipop	빅뱅 &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18	눈물이 똑똑	케이윌 (K.Will)	로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19	소원을 말해봐 (Genie)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20	8282	다비치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1	내 귀에 캔디 (Feat. 택연 Of 2pm)	백지영	로엔터테인먼트	WS뮤직
	22	반쪽	화요비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3	You And I	박봄	다날	YG 엔터테인먼트
	24	Again & Again	2pm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25	애인 있어요	이은미	Sony Music	내가 네트워크
	26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7	Hot Issue	4minute (포미닛)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8	Fire	2NE1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29	사고쳤어요	다비치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30	대박이야!	대성	엠넷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2010 상반기	1	죽어도 못 보내	2am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2	외톨이야	씨엔블루 (CNBLUE)	엠넷미디어	F&C Music
	3	OH!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4	Bubble Love	MC 몽 & 서인영	KT 뮤직	넥스타엔터테인먼트
	5	너 아니면 안돼	슈퍼주니어 예성	포니캐년코리아	에이스토리
	6	시간아 멈춰라	다비치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7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T-ara)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8	고백	뜨거운 감자	Universal Music	다음기획
	9	원더우먼	씨야 & 다비치 & 티아라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10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가인 & 조권	로엔터테인먼트	내가 네트워크
	11	Tik Tok	Ke\$ha	Sony Music	Rca Records Label
	12	루팡 (Lupin)	카라 (KARA)	엠넷미디어	디에스피미디어
	13	Run Devil Run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SM Entertainment
	14	낙인	임재범	포니캐년코리아	포니캐년코리아
	15	널 붙잡을 노래	비 (Rain)	엠넷미디어	제이플엔터테인먼트
	16	Love	씨엔블루 (CNBLUE)	엠넷미디어	F&C Music
	17	밤하늘의 별을.. (with KCM & No Noo)	양정승 (Kiro Y)	에이앤지모즈	출양미디어
	18	2 Different Tears	원더걸스 (Wonder Girls)	로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19	Chitty Chitty Bang Bang (Feat. Ceejay Of Freshboyz)	이효리	엠넷미디어	엠넷미디어
	20	잔소리 (With 2am 송승)	아이유 (IU)	로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21	이 사람이야	김중국	로엔터테인먼트	원오원
	22	자기가 여보야 사랑아	린 (LYn)	KT 뮤직	라이브웍스컴퍼니
	23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다날	코어콘텐츠미디어
	24	사랑이 술을 가르쳐 (Feat. 백찬 From 8ight)	이승기	로엔터테인먼트	후크엔터테인먼트
	25	배운게 사랑이라	디셈버 (December)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26	선물 (Feat. 은지원)	케이윌 (K.Will)	로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27	Bo Peep Bo Peep	티아라 (T-ara)	엠넷미디어	코어콘텐츠미디어
	28	말도 안돼	윤하	로엔터테인먼트	이김프로덕션
	29	잘못했어	2am	로엔터테인먼트	JYP & Big Hit Ent
	30	Magic	시크릿 (Secret)	로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자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제공자료 편집

2009년 TOP 30 콘서트				
구분	순위	공연명	공연장명	지역
인터넷	1	김정훈 사이의 원타치 전국투어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2	2009 Jazz and the City	KT아트홀	서울
	3	2009 이승철 크리스마스 콘서트 Romantica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4	2009 결투쇼 미친 크리스마스	코엑스 3층 C홀 1,2실	서울
	5	이승환 20주년 기념 콘서트 '공(空)'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제2체육관)	서울
	6	박진영 콘서트 '나쁜파티'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	서울
	7	2009 이문세 붉은노을 서울콘서트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	서울
	8	2009 이문세 붉은노을 at Christmas	이화여대 대강당	서울
	9	뮤즈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0	서울재즈페스티벌 200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11	김정훈 사이의 원타치 전국투어 - 부산	KBS 부산홀	부산
	12	버비킴 김범수 휘성 - 2009 the soul '더 보컬리스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3	박효신 10주년 기념콘서트 '2009 Gift Live Tour'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서울
	14	박효신 10주년 기념콘서트 '2009 Gift Live Tour +'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15	오아시스(OASIS)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6	사라 브라이트만 심포니 코리아 투어 2009 서울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7	2009 어버이날기념 김영임의 소리 후 대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18	ETPFEST 2009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서울
	19	2009 TIME TO ROCK FESTIVAL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서울
	20	2009 소극장 결투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서울
	21	비 콘서트 - LEGEND OF RAINISM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22	THE신승훈SHOW - Love O'clock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서울
	23	10집 앨범발매 기념 2009 이승철 콘서트 Mtopia - 서울공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	서울
	24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VII 그린데이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25	이소라 소극장 콘서트 - 두번째 봄	서강대학교 메리홀	서울
	26	2009 이승기 희망 콘서트 in Seoul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서울
	27	대명절추석특집 이미지50주년 효 대공연 In 서울앵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28	이미자 노래 50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29	YB 콘서트	홍대 V-Hall	서울
	30	건즈앤로지스 (GUNS N' ROSES) 첫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티켓링크	1	2009 Jazz and the City	KT 아트홀	서울
	2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09	올림픽공원	서울
	3	이미자 노래 50년 기념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4	2009 광주 희망 콘서트	광주무등경기장 (축구장)	광주
	5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09 I LOVE GMF	올림픽공원	서울
	6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7	2009 이선희 라이브 콘서트-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전주)
	8	이은미 20주년 콘서트-소리위를 걷다(양주)	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경기(양주)
	9	버비킴, 김범수, 휘성-2009 the soul(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0	버비킴 김범수 휘성-2009 the soul(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전주)
	11	테라페페 내한 콘서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서울
	12	김건우 2009 전국투어콘서트-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전주)
	13	버비킴 콘서트 Love chapter. 1 서울 앵클	연세대학교 대강당	서울
	14	장사익 소리판 꽃구경-전주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전주)
	15	노리플라이 콘서트 ROAD 3 : World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서울
	16	이승철 10집 발매기념 Mtopia 전주콘서트	전북대상성문화회관	전북(전주)
	17	2009 조지윈스턴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18	조규찬 소극장콘서트	대학교 신연아트홀	서울
	19	갈갈이 패밀리 신나는 개그콘서트	갈갈이 홀	서울
	20	2009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콘서트 - 부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21	언니네 이발관 국장식 월요병 공개방송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서울
	22	개그콘서트 전국투어-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23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호림아트홀	서울
	24	2009년 인순이 콘서트(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검단홀)	경기(하남)
	25	크리스마스 예피소드	영등포아트홀	서울
	26	2009 이병우 기타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27	송대만 Vs 태진아 광주콘서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28	VALENTINE SERENADE (발렌타인 세레나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29	제6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대	경기(가평)
	30	2009 김건우 전국투어 콘서트-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출처: 인터넷 제공자료 편집 / 티켓링크 제공자료 편집

2010년 상반기 TOP 30 콘서트				
구분	순위	공연명	공연장명	지역
인터넷	1	2010 브라운 아이드 소울 콘서트 'SOUL BREEZE'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2	SS501, THE 1ST ASIA TOUR in SEOUL ENCORE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3	이소라 소극장 콘서트 - 세번째 불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서울
	4	2010 어버이날기념 김영임의소리 후 대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5	25주년기념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오케스트라Rock' - 서울	잠실주경기장	서울
	6	김장훈 싸이의 '원타치 그 마지막'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서울
	7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X 여서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8	미카 내한공연 'MIKA LIVE IN SEOUL'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서울
	9	밥 딜런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0	조용필 콘서트 Love in Love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서울
	11	2010 브라운 아이드 소울 콘서트 'SOUL BREEZE' - 대구	대구 EXCO	대구
	12	바이브 4집 발매기념 콘서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서울
	13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2010 (Jisan Valley Rock Festival 2010)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경기
	14	15주년 기념 2010 컬투 화이트데이 콘서트 - 군포공연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
	15	'GUITAR의 神' 제프 벡(JEFF BECK)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서울
	16	박종호 뮤지컬 콘서트 'The Story'	상명아트센터 대극장(계당홀)	서울
	17	레이프 가렛(LEIF GARRETT) 내한공연 -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서울
	18	25주년기념 이승철 전국투어 콘서트 '오케스트라Rock' - 대구	대구 EXCO	대구
	19	게리 무어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서울
	20	2010 브라운아이드소울 콘서트 'SOUL BREEZE' - 부산	KBS 부산홀	부산
	21	2009~2010 이문세 붉은노을 울산콘서트	울산동천체육관	울산
	22	2010 효콘서트 하춘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23	2010년 이승철 콘서트 Romantica - 성남공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24	김건호 - 화이트데이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25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상인동 월드컵 공원 내 노을공원	서울
	26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VII 그린데이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27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IX 안드레아 보첼리 내한공연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28	제5회 이승환이 꾸꾸는 음악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서울
	29	손호영 소극장 콘서트 - Hoyoung 2 Ocean	KT&G 상상아트홀	서울
	30	15주년 기념 2010 컬투쇼 - 성남공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티켓링크	1	2010 love actually	올레스퀘어/KT아트홀	서울
	2	2010 Jazz and the City	목동KT chamber Hall	서울
	3	김제동 토크 콘서트 전주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음악당	전북
	4	심수봉 30주년기념콘서트 Beautiful Days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5	김제동 토크콘서트-순천공연 노 브레이크!	순천대학교 체육관	전남
	6	킹스싱어즈 2010 내한공연 - 포항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대공연장	경북
	7	이미자 효 콘서트 in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8	현대카드슈퍼콘서트 VIII - 휘트니 휴스턴 첫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9	15주년기념 2010 컬투 -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10	YTN 개국 15주년, 조수미 Ich Liebe d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11	김연자 광주 콘서트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12	양희은 콘서트-사랑방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13	현대카드 슈퍼콘서트X 여서 첫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14	팻 메시니 솔로-오케스트라온	LG아트센터	서울
	15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	서울
	16	파이널 판타지 오케스트라 콘서트 - 디스턴트 월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17	현대카드 슈퍼콘서트IX 안드레아 보첼리 내한공연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18	김장훈&싸이 원타치 전국투어 - 여수	여수 진남체육관	전남
	19	2010 이승철 콘서트 Romantica - 천안공연	천안 유관순 체육관	충청
	20	2010 컬투콘서트 (오산)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오산아트홀)	경기
	21	재즈보컬 웅산의 화이트데이 콘서트 Windy Spring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전북
	22	15주년기념 2010 컬투쇼 - 순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전남
	23	2010 김영임의 소리 효 대공연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24	2010 이승철 콘서트 Romantica - 안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경기
	25	2010 조항조 대전 콘서트	충남대 정심화홀	대전
	26	마커스 소극장 콘서트	웅산 아트센터 소극장	서울
	27	2010 이은결 AGAIN 이은결 MAGIC V SHOW	여수 시민회관 대공연장	전남
	28	웅산의 윈디스프링 콘서트	대구수성아트피아 용지홀 (대공연장)	대구
	29	이소라 콘서트 - 세번째 불 in 전주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전북
	30	2010 추억의 낭만콘서트 - 목포	목포실내체육관	전남

출처: 인터넷 제공자료 편집 / 티켓링크 제공자료 편집

2009년 TOP 30 뮤지컬				
구분	순위	공연명	공연장명	지역
인터파크	1	드림걸즈	사롯데씨어터	서울
	2	그리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서울
	3	김종욱 찾기	대학교 예술마당 1관	서울
	4	지킬 앤 하이드 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5	맘미미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
	6	송년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7	스프링 어웨이크닝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서울
	8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9	시카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10	삼총사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11	노트르담 드 파리 - 대구	대구계명아트센터	대구
	12	헤드윅	KT&G 상상아트홀	서울
	13	그리스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서울
	14	노트르담 드 파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
	15	2009마당놀이<이춘풍 난봉기>	서울월드컵경기장 마당놀이 전용극장	서울
	16	헤어스프레이	한전아트센터	서울
	17	지킬 앤 하이드	LG아트센터	서울
	18	금발이 너무해	코엑스 아티움	서울
	19	남한산성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20	웨딩싱어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21	젊음의 행진	코엑스 아티움	서울
	22	매혹의 뮤지컬 <돈 주앙>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23	매혹의 뮤지컬 <돈 주앙>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24	14주년 기념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한성아트홀 (구 인켈아트홀)	서울
	25	렌트	한전아트센터	서울
	26	시카고 - 대구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
	27	2009 점프 서울	IBK 점프 서울 전용극장 B2	서울
	28	2009 SBS 불쇼이 아이소쇼 - 목동	목동아이스링크	서울
	29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대학교 예술마당 4관	서울
	30	뮤지컬 <쓰릴 미>	The STAGE	서울
티켓링크	1	Musical 오페라의 유령	사롯데씨어터	서울
	2	뮤지컬 아이러브유	KT&G상상아트홀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서울
	3	뮤지컬 영웅	LG아트센터	서울
	4	뮤지컬 명성황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
	5	2009 MBC 마당놀이 토정비결	창충체육관	서울
	6	뮤지컬 젊음의 행진	코엑스아티움 / 서울열린극장 창동	서울
	7	Musical SHOUTING (뮤지컬 사우팅)	한전아트센터	서울
	8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LG아트센터	서울
	9	드로잉쇼	드로잉쇼 전용관 (구 질러홀)	서울
	10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서울
	11	뮤지컬 난센스	창조 콘서트홀 1관	서울
	12	코엑스아티움 개관작,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코엑스 아티움	서울
	13	마당놀이 - 심청 (연장공연)	서울월드컵경기장 마당놀이전용극장	서울
	14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2009 대구	계명아트센터	대구
	15	NO.1 뮤지컬 그리스(Grease)	서울열린극장 창동	서울
	16	난타(NANTA) 강북공연	시네마정동 1관	서울
	17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비밀의 방 (포함)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경북
	18	프랑스뮤지컬 로미오앤줄리엣 (한국어 공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서울
	19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전주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주
	20	Musical CATS (뮤지컬 캣츠 전주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주
	21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잠실 롯데월드 예술극장/이화교 100주년 기념관	서울
	22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대학교 예술마당 4관	서울
	23	2009 고공뮤지컬 대장금 - 시즌2	경희궁 송정전	서울
	24	뮤지컬 구름빵	서울열린극장 창동	서울
	25	뮤지컬 바람의 나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서울
	26	신 행진 와이키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
	27	송승환의 어린이난타	웅진씽크빅 아트홀	서울
	28	뮤지컬 김종욱 찾기 - 대구	대구보신문화회관	대구
	29	뮤지컬 웨딩싱어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30	Musical CATS (뮤지컬 캣츠 광주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출처: 인터파크 제공자료 편집 / 티켓링크 제공자료 편집

2010년 상반기 TOP 30 뮤지컬

구분	순위	공연명	공연장명	지역
인터넷	1	시카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2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3	형제는 웅감했다	코엑스 아티움	서울
	4	맘미아 - 부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
	5	울속업 (All Shook Up)	한전아트센터	서울
	6	김종욱 찾기	대חק로 예술마당 1관	서울
	7	금발이 너무해	코엑스 아티움	서울
	8	미스사이공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9	메노포즈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서울
	10	몬테크리스토	유니버설아트센터	서울
	11	태양의노래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
	12	미스사이공-성남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경기
	13	주크박스 플라잉 뮤지컬 구름빵	돌아트홀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서울
	14	쓰릴미	The STAGE	서울
	15	리버댄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16	EBS와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비밀의 방'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서울
	17	그리스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서울
	18	헤드릭	KT&G 상상아트홀	서울
	19	헤어스프레이	한전아트센터	서울
	20	송승환의 어린이탄타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웅진씽크빅아트홀	서울
	21	뮤지컬빨래	학전그린 소극장	서울
	22	코코몽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서울
	23	'Wedding Singer (웨딩싱어)'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24	뮤지컬 싱글즈	PMC대학로자유극장	서울
	25	EBS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양재동)	서울
	26	유기능 뮤지컬 총각네 아재가게 2.0	SM아트홀	서울
	27	브로드웨이 가족 뮤지컬 <토미스와 친구들2>	돌아트홀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서울
	28	뮤지컬 싱글즈	대חק로 예술마당 3관	서울
	29	익스트림 퍼포먼스 '태권몽키'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서울
	30	미스사이공-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경기
티케팅	1	Musical 오페라의 유령	샤롯데씨어터	서울
	2	뮤지컬 모차르트 (대구)	계명아트센터	대구
	3	뮤지컬 아이 러브 유	대חק로 아트웍씨어터	서울
	4	뮤지컬 맘미아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5	뮤지컬 시카고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6	뽀로로와 비밀의 방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7	송승환의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웅진씽크빅 아트홀	서울
	8	2010 공공뮤지컬 대장금 - 시즌3	경희궁 송정전	서울
	9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잠실 롯데월드 예술극장	서울
	10	뮤지컬 진짜 진짜 좋아해 - 순천공연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전남
	11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LG아트센터	서울
	12	뮤지컬 아이 러브 유	대חק로 아트웍씨어터	서울
	13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동화여행 -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
	14	구름빵	어린이공원 돌아트홀	서울
	15	뮤지컬 웨딩싱어	충무아트홀 대극장	서울
	16	송승환의 어린이 탄타-오즈의 마법사편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17	드로잉쇼	드로잉쇼 전용관 (구 질러홀)	서울
	18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시즌 3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서울
	19	뮤지컬 모차르트 (부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20	뮤지컬 년센스	창조콘서트홀	서울
	21	EBS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22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전북
	23	뮤지컬 태양의 노래	세종 문화회관 M씨어터	서울
	24	뮤지컬 코러스라인(A Chorus Line)	코엑스 아티움	서울
	25	뮤지컬-시카고 (광주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
	26	더 스토리 오브 노틀담 드 파리	서울열린극장 창동	서울
	27	우리 뮤지컬 (진짜 진짜 좋아해)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서울
	28	난타(NANTA) 강북공연	시네마정동 1관	서울
	29	뮤지컬 진짜 진짜 좋아해 - 목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	전남
	30	국민뮤지컬 재즈 루나틱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전북

출처: 인터넷 제공자료 편집 / 티켓링크 제공자료 편집

3. 음악 우수 신인 발굴 프로그램 루키 현황

2008~2010년 상반기 이달의 우수신인음반 선정 결과		
년/월	선정음반	
2008년	1월	마르코의 앨범 「Music Is My Life」
	2월	없음
	3월	산하의 앨범 「Fahrenheit」
	4월	피터(Peter)의 앨범 「Show Man」
	5월	덱(Deb)의 앨범 「Parallel Moons」
	6월	나비(Navi)의 싱글앨범 「1st Single I LUV U」
	7월	H7 美人의 디지털 싱글앨범 「H7 美人 Sun&Love Project」
	8월	티지어스의 앨범 「God of Harmony」
	9월	2am의 디지털 싱글앨범 「이노래」
	10월	시메트리(Symmetry)의 앨범 「Passion of Paradiso」
	11월	아이유의 앨범 「Lost and Found」
	12월	Xing의 디지털 싱글앨범 「Xing Opera」
2009년	1월	ZY의 앨범 「Memories」
	2월	약통의 앨범 「ACHTUNG」
	3월	메이다나의 앨범 「7teen」
	4월	잠퍼의 앨범 「Yes」
	5월	AJ의 프로젝트앨범 「FIRST EPISODE A NEW HERO」
	6월	앤써의 앨범 「Rising」
	7월	솔제이의 앨범 「미친 사랑의 추억」
	8월	포미닛의 앨범 「Hot Issue」
	9월	슈프림팀의 앨범 「Supreme Team To Excellent Adventure」
	10월	B2Y의 앨범 「B2Y 1st mini album」
	11월	슈아이의 앨범 「SHU-I first single」
	12월	비스트의 앨범 「BEAST IS THE B2ST」
2010년	1월	정석「사랑을 삼키다」
	2월	선열「Wus Ma Name?」
	3월	미지「The Challenge」
	4월	없음
	5월	없음
	6월	김여희 「나의노래」
	7월	아리밴드 「Kiss me darling」
	8월	틴탑 「박수」

2008~2010년 중반기, 우수 인디뮤지션 공개 오디오션 선정 결과			
구 분	일시	선정팀	비고
2009년	4월	소울스테디라커스, 약통, Koffee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5월	텔레파시, 제8극장, Victor View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6월	나비맛, 시와, 후나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7월	아폴로18, 고고보이스, 로맨틱펀치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출연
	8월	몽니, 흙, 굴소년단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출연
	9월 (1)	게이트플러워즈, 좋아서하는밴드, 노리플라이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출연
	9월 (2)	데이브레이크, 박주원, 포니, 캅스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출연
2010년	6월	바닐라시티, 몽니	지산밸리락페스티벌 출연
	7월	캅스(The Koxx), 옥상달빛	지산밸리락페스티벌 출연
	8월	바람을 가르고, 안영바다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출연
	9월	조정처, 랄라스윗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출연

4. 2009년 국내·외 음악 주요행사 현황

1) 2009년 음악관련 국내 주요행사 현황

2009년 음악관련 국내 주요행사 현황			
제목	주최/주관	날짜	장소
우수 인디 뮤지션 선발 공개 오디션 개최	문화부보도자료	2009-04-17	홍대 <롤링홀>
Korea drama song Festival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05-08	신주쿠 엘씨티도쿄
KCTA 2009 전국가요대상 개최	한국케이볼TV방송협회	2009-06-04~2009-06-07	대전컨벤션센터
2009 대한민국 가수대축제	(사)대한가수협회	2009-06-19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009드림콘서트(2009 Dream Concert)	한국연예제작자협회	2009-10-10	상암동월드컵경기장
한국대중음악축제-2009 올해의 헬로루키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 EBS 스페이스 공감	2009-11-14	올림픽공원 팬싱경기장
FEEL KOREA, K-POP Night & K-Fashion show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공동 주관	2009-11-24~2009-11-25	중국 상해 대무대, 중국 상해 롱즈명 호텔

2) 2009년 음악관련 해외 주요행사 현황

MIDEM 2009			
개최장소	Cannes, France	개최시기	2009. 1. 18 ~ 1. 21
주관	Reed Midem		
행사규모	80개국 이상, 8,003 여명 참가		
참여업체	음악 산업에 있어 주요 업체인 Universal Music Group, Sony Music Entertainment, EMI, Warner Music 등 메이저 음반사들과 DREAMWORKS RECORDS, MINISTRY OF SOUND 등을 포함한 음악 관련 업체들		
행사목적	음악 시장 및 음악 공연에 대한 정보의 공유하며 향후 시장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		
주요특징	43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 음악 산업 전시회로, 매년 1월에 개최되며 5일간 진행되는 행사임		

Digital Music Forum East & West			
개최장소	New York, USA (East) Los Angeles, USA (West)	개최시기	2009. 2. 25 ~ 2. 26 2009. 10. 7 ~ 10. 8
주관	Digital Media Wire		
행사규모	400명 이상의 토론자, 70여 개의 사업자 참여 (East) 300명 이상의 토론자들의 참여 (West)		
참여업체	Sony Music, EMI등의 주요 음반 레이블과 Imeem, Pandora 등의 온라인 음악 사업자, Nokia, BlackBerry 등 휴대단말 벤더 등 디지털 음악과 관련한 사업자		
행사목적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의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과 향후 음악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주요특징	두 차례로 나누어 치러지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컨퍼런스(Digital Media Conference)와 연계되어 진행됨		

SXSW Music and Media Conference			
개최장소	Texas, USA	개최시기	2009. 3. 18 ~ 3. 22
주관	South by Southwest Inc.		
행사규모	11,687명 참가		
참여업체	155개 사업체 참가		
행사목적	음악 산업에 있어 창의적인 이슈와 산업적 측면에 있어 의견 교환 및 신규 아티스트의 쇼케이스		
주요특징	198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음악, 영화, 인터랙티브 분야를 다루는 축제이자 컨퍼런스로 매년 봄 텍사스 주의 오스틴 지역 내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됨. 세 분야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최되며 행사 일자 또한 다름		

Music Matters			
개최장소	Hong Kong, China	개최시기	2009. 6. 2 ~ 6. 4
주관	Branded Asia		
행사규모	300개 이상의 음악관련 기업, 26개 국, 78명의 발표자들의 참여로, 행사 참가자 600명가량으로 추정됨		
참여업체	Sony Music, EMI등의 주요 음반 레이블, MTV, MPAJ, CNET Asia, Television Asia 등의 아시아지역 사업체		
행사목적	아시아 태평양지역, 일본, 중국의 음악 산업에 대한 전망과 견해를 교환		
주요특징	아태지역, 일본,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적인 특색을 관찰할 수 있음		

5. 음악 콘텐츠 계약 매뉴얼 (수출 분야)

1) 라이선싱 계약 (외국음반사-국내음반사와의 계약)

이미 제작, 발매된 외국 음반에 대해 음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한국(기타 지역 포함 가능)내에서 음반을 발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 라이선스 기간, 로열티 지급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샘플서식 1> 라이선싱 계약 (외국음반사-국내음반사)(영문)

THIS AGREEMENT made in duplicate as of the ____ of _____, 200 ____
Regarding

Album: _____

BETWE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CENSOR")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CENSEE")

WHEREAS

A. LICENSOR owns the rights for the "Licensed Territory" (as defined in the Schedule(s) hereto) on the Master Recordings in the Schedu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sters") featuring the performances as indicated in the Schedu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st");

B. LICENSEE is in a position to provide manufacturing, sales, distribution, and marketing facilities for records in the Licensed Territory.

WITNESSETH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of the mutual covenants and undertakings hereinafter set forth, the parties hereto have agreed as follows:

1. Definitions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expressions shall have the following respective meaning where the context so applies:

- a) "Records" shall mean mechanical reproductions for the oral transmission in vinyl, disc, tape, or compact disc form and not coupled with visual elements of the Masters.
- b) "The Term" shall mean the term specified in the Schedule(s) hereto.
- c) "Master" shall mean any recording of sound by any method and on any substance or material, whether now or hereafter known, which is used in the recording, production and/or manufacture of Records as hereinafter defined.
- d) "Person" and "Party" shall mean any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association or other organised group of persons or legal successors or representatives of the foregoing.
- e) "Delivery" or "Delivered" when used with respect to Masters hereunder, shall mean to actual receipt of Licensee of fully mixed and edited Masters, in a quality satisfactory to Licensee and ready for Licensee's manufacture of Records, and all necessary licenses (excluding mechanical licenses), applicable approvals and consents.

2. Grant of Rights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during the Term for the Licensed Territory only and subject to the LICENSEE duly complying with its obligation hereunder and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right:

- a) The 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manufacture Records produced solely from the Masters and with NO VARIATIONS OR MODIFICATIONS of the Masters unless provided for, herein.
- b) The 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sell such Records manufactured by it PROVIDED THAT all records sold hereunder shall bear the legend "Under Exclusive License from
- c) NO CHANGES will be made with regards to Titles of songs or names of artists as stated in the original label information supplied by LICENSOR.
- d) The right to use and publish the names, photographs, and likeness' of the artists for advertising and trade purposes only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the Records hereunder.
- e) The righ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applicable laws of the Licensed Territory to authorize the public performance of Records hereunder via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in the Licensed Territory.
- f)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are reserved. We also reserve the following rights:
 - (i) synchronization rights including in the Territory as part of a wider territory;
 - (ii) compilation/soundtrack rights including in the Territory as part of a wider Territory;
 - (iii) the right to commercially exploit the Masters as part of videos or audio-visual devices;
 - (iv) the right to grant sample licenses including for the Territory as part of a wider territory;
 - (v) the right after the Term to embody Masters which have only been delivered to you as Singles upon Artist Albums;
 - (vi) the right to include the Masters in any radio, television or cinema commercial advertisement or programme including for the Territory as part of a wider territory.

3. Delivery of Masters

Licensor shall deliver to Licensee one duplicate recording of each Master subject to the provisions hereof. Licensee shall reimburse Licensor for the cost of duplication and transportation with respect to it. Such recording shall be of suitable quality for use in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records for general sale. At time of the delivery to Licensee of the first such derivative from each Master, Licensor shall supply to Licensee in writing the correct title of the recorded work, the names of the author, composer and publisher thereof, the timing, together with any additional copyright information known to Licensor as well as the names of the recording artists in appropriate form for display on record labels and packaging.

4. Obligations of LICENSEE

- a) Forthwith upon delivery of the Masters by LICENSOR, LICENSEE shall press and manufacture Records therefrom and the LICENSEE must release within the Licensed Territory Records manufactured from the Masters within ____ (___) days after receipt of the Masters and generally will use its best efforts and endeavors to sell and distribute the Records throughout the Licensed Territory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 b) LICENSEE shall release all Records hereunder in formats mutually agreed from time to time. LICENSEE will provide ____ copies of each format to the LICENSOR immediately upon release for its archives. All rights not herein expressly granted to the LICENSEE are hereby reserved by LICENSOR.
- c) LICENSEE shall not distribute or sell Records hereunder other than at its top price level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Nor shall "Premiums, Budget, Mid-Priced, Direct Mail Order or Record Clubs" records are sol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LICENSOR.
- d) With respect to Records manufactured and sold by LICENSEE hereunder, LICENSEE shall pay LICENSOR the Advances & Royalty specified in the Schedule(s) hereto of the suggested or recommended PPD (Published Price to Dealer) selling price in the country of sale of such Records.
 - (i) With respect to Master recordings which embody copyrighted musical or other material, LICENSEE agrees to secure licenses from the appropriate copyright proprietors or their agents, publishers, or collection societies in the Licensed Territory to enable it to exercise its rights hereunder and LICENSEE shall make all payments therefore directly to such proprietors, agents publishers or collection societies.

5. Royalty Statement and Accounting Provisions

- a) During the Term and thereafter, as long as LICENSEE continues to be entitled to sell Records hereunder, LICENSEE agrees to keep usual and proper records and books of account and all usual and proper entries pursuant to standard accounting and

business practices, relating to the sale of Records hereunder and to deliver to LICENSOR semi-annually, with ___ days of each six month period respectively ending on June and December respectively, written statements showing the sale of Records hereunder during such period and in particular showing:

- (i) The number of copies of Records pressed within the Licensed Territory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 (ii) The number of copies of Records released within the Licensed Territory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 (iii) The number of copies of Records sold within the Licensed Territory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and suggested or recommended PPD list price of such Records.
 - (iv) The amount of royalties or other payments due to LICENSOR pursuant to this Agreement.
- b) Simultaneously with the delivery of each accounting stat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5(a), above,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the total amount shown to be due and insofar as in excess of the advance paid payable to LICENSOR by such statement. All payments shall be made to LICENSOR in EURO's. In the event that LICENSEE is unable because of government restrictions to make payment in the manner described in the preceding sentence and LICENSOR agrees to accept payment in LICENSEE's national currency, LICENSEE shall deposit (at LICENSEE's expense) to LICENSOR's credit or account, in a depository selected by LICENSOR, all sums payable to LICENSOR hereunder. LICENSOR acknowledges that if LICENSEE is required by governmental regulations to withhold tax or payments otherwise due hereunder then LICENSEE shall afford LICENSOR any reasonable assistance required to enable LICENSOR to obtain a tax credit therefore.
- c) LICENSEE shall maintain books and records, which report the sales of records, and the calculation of net receipts derived from the exploitation of Masters. LICENSOR (or LICENSOR's Agent) may at any time during the Term, and for a period of ___ years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said term, make a complete and thorough examination of LICENSEE's books and records for accuracy. If LICENSOR wishes to make an examination LICENSOR will be required to notify LICENSEE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when LICENSOR plans to commence the examination. Interest will be due at ___ per cent (___ %) above base lending rate of OOO Bank on under or late payments to us. You will pay audit and inspection costs if a discrepancy of per cent (___ %) or more is found on audit.
- d)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withhold a portion of the royalties owing to LICENSOR hereunder as a reserve against returns. The royalty reserves shall be calculated as the royalties computed on ___ (___ %) of the Records sold during any one particular calendar period, and shall be liquidated in the next calendar period after the period in which first held.
- e) No royalty shall be payable hereunder by LICENSEE to LICENSOR for Records returned for credit, for Records supplied for publicity or promotional purposes ('promo copies') or for Records sold as deletes, surplus or scrap.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LICENSEE undertakes to limit the number of 'promo copies' to a maximum of ___ copies pressed and sold.

6. Warranties, Representations, Restrictions, Indemnification's

- a) LICENSEE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it is now, and will continue to be engage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and exploitation of phonographic records in the Licensed Territory, and that it possesses the full right,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and perform this Agreement in all respects.
- b) LICENS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 (i) At the time of delivery of the Masters hereunder to LICENSEE, LICENSOR will (same as LICENSOR may notify the LICENSEE on or before the time of delivery) be the owner of the entire manufacturing, selling, and distributing rights in the Masters in the form of Records for the Licensed Territory for the period of this Agreement.
 - (ii) LICENSOR possesses full right,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and perform this Agreement and that it will not, during the Term (subject to LICENSEE complying with its obligations) grant or attempt to grant to others than LICENSEE, rights or any kind in any of the said Masters the exercise of which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hereunder.
- c) In the event of any third party infringing or attempting to infringe during the Term any rights acquired by LICENSEE, LICENSEE shall inform LICENSOR immediately when such infringement becomes known to it. LICENSOR reserves the right, but shall not be obligated, to take whatever legal action it deem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In the event that LICENSOR decides that proceedings shall be commenced, LICENSEE shall provide all information and assistance to LICENSOR that may be necessary. LICENSOR shall bear the cost of any such proceeding but shall be entitled to retain all damages recovered.
- d) In the event that LICENSOR elects not to commence such proceedings a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LICENSEE may at its own expense commence proceedings and shall be entitled to retain a por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y such damages recovered. In prosecuting such action, LICENSEE shall select solicitors, and/or counsel in full consultation with LICENSOR, but LICENSOR agrees to co-operate fully with LICENSEE in any such proceedings and furnish LICENSEE (upon LICENSEE's reasonable request) with such information and assistance, as LICENSOR considers advisable with such proceedings. Any court proceedings taken by LICENSEE shall be subject to the LICENSOR's general consent in writing and no answer being obtained within ___ (___) days thereafter, approval shall be deemed granted.

- e) LICENSEE agrees to indemnify LICENSOR and to hold LICENSOR harmless against any damages, costs, expenses, fees (including attorney and accountant fees) incurred or suffered by LICENSOR in any claim, suit, or proceeding instituted by or against LICENSOR in which any assertion is mad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warranty or covenant made by LICENSEE.
- f) LICENSOR agrees to indemnify LICENSEE and to hold LICENSEE harmless against any damages, costs, expenses, fees (including attorney and accountant fees) incurred or suffered by LICENSEE in any claim, suit, or proceeding instituted by or against LICENSEE in which any assertion is mad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warranty or covenant made by LICENSOR.

7. Default and Cure Provisions

- a)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at any time by giving notice in writing to LICENSE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forthwith on the happening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nd in such event LICENSEE shall have no right of sell-off and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license in said territory:
 - (i) If LICENSEE defaults in the observances or performances of any agreements or provisions contained herein and fails to remedy such default within ____ (___) days of receipt by LICENSEE a notice requiring such default to be remedied.
 - (ii) If any fiscal or monetary judgement is obtained against LICENSEE and the same is not satisfied within ____ (___) days of the date of such judgement.
 - (iii) If a distress or execution is levied or issued upon or against any of the chattels or property of LICENSEE and it is not paid out within ____ (___) days of the levying of the same.
 - (iv) In the event of the LICENSEE undergoing any re-structural proceedings either voluntary or involuntary.
 - (v) If a resolution is passed for the winding-up of LICENSEE or an injunction for the liquidation of LICENSEE is presented.
 - (vi) If LICENSEE shall stop payment or cease or threaten to cease to carry on its business.
 - (vii) If a receiver of LICENSEE, its assets, or any part thereof shall be appointed or a resolution is passed for such an appointment.
- b) In the event of termination for any cause whatsoever of the license granted hereunder, all royalties accrued shall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to LICENSOR.
- c)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all rights granted by LICENSOR free and clear of any claims by LICENSEE. Thereupon all tapes or matrices supplied to LICENSEE shall at LICENSOR's election either be destroyed in the presence of LICENSOR'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r delivered to LICENSOR's designee in the Licensed Territory free of costs to LICENSOR or LICENSOR's designee. All derivatives of such tapes and matrices including duplicate tapes, masters, mothers, stampers shall be destroyed by LICENSEE upon said expiration and an affidavit of destruction shall be promptly furnished by LICENSEE to LICENSOR. LICENSEE shall nevertheless have the non-exclusive right to continue to sell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and without distress sales) for a period of ____ (___)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expiration the Records which were in LICENSEE's stock at the time of said expiration LICENSEE shall have delivered to LICENSOR a written and verified inventory of such Records showing the factory costs therefore and that LICENSEE continues to account for and pay the royalties herein provided computed on the basis is not less than the suggested PPD (Published Price to Dealer) selling price prevailing for such Records on the date of said expiration and PROVIDED FURTHER THAT at any time after the said expiration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purchase from LICENSEE at LICENSEE's factory cost all or part of the inventory not therefore sold by LICENSEE in which event LICENSEE will be relieved from any obligations to account and make payments for such re-purchased Records.
- d) Any notice, accounting, or payment which either party is hereto required or desires to give to the other party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addressed to such other addresses as such party shall have designated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All notices and accountings shall be sent via express mail, air courier, registered mail, or any other form of delivery in respect of which written acknowledgement of receipt is required and shall be deemed duly given when actually received or ____ (___) days after sending, whichever occurs first. Simultaneous to the sending as aforementioned, the party shall send the same document via facsimile to the other party.
- e) All notices, statements, and accounting shall be sent as follows: to LICENSOR shall be so delivered or be so mailed to it at: or to such other address as it may from time to time have notified to LICENSEE. (xyz@abc.com)

8. Remixing of Masters

- a) You shall not be entitled to remix Masters delivered to you without our prior written approval as to the identity of the re-mixer and the budget for the remix. All remixes of Masters shall be subject to our written approval prior to use. Remixing costs incurred by you shall be ____ % recoupable.

b) We shall own the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in those remixes of Masters made by you. We shall be entitled to exploit such remixes throughout the World except for the Territory and during the term rights granted to you hereunder without payment to you. Furthermore we shall be entitled to exploit such remixes outside the Territory during the Rights Period free of charge.

9. Videos

If you or any licensee of yours wish to use in the Territory a video for promotional purposes which video was commissioned by us or on our behalf then you shall be entitled to do so subject to the payment by you to us of a contribution equal to an amount as mentioned in the schedule hereto per video ____ per cent (___ %) of such contribution shall be recoupable.

10. Options

Each of the Option(s) referred to in the Schedule, provided always that such Option(s) shall be granted to Licensor, shall be exercised (if any at all) by Licensee in written within ____ (___) month after the date of delivery by Licensor of the Option(s).

11.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attached schedule(s) contain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to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and supersedes any prior agreements, written or oral, between the parties or their successors. No change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LICENSOR or LICENSEE unless it is made by an instrument 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oth parties. A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 any instance shall not be deemed to waive it for the future or of any subsequent breach thereof. All remedies, rights, undertaking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cumulative and none of them shall be in limitation of any other remedy, right, undertaking, obligation or agreement of either party. The headings of the paragraphs hereof are for convenience only and shall not be deemed to limit or in any way affect the scope, meaning or intent of this Agreement or any portion thereof.

12. Independent Contracto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create a partner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ties understand that LICENSEE is acting hereunder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13. Applicable Law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only under the law of Amsterdam-The Netherlands. If any part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valid or unenforceable, it shall not effect the validity of the balan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to confirm that it is their wish that this agreement as well as the documents relating hereto, including notices have been and shall be drawn up in the English language only.

14. Severability Clause

If any provision hereof shall be for any reason illegal or unenforceable, the same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the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hereof.

15. Attorney Fees

In the event of a dispute arising out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tract,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any and all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other costs incurred in the enforcement of the terms of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16. Assignment

LICENSOR may assign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or to any subsidiary, affiliated or controlling corporation or to any Person LICENSOR may also assign its rights hereunder to any of its licensees to the extent necessary or advisable in LICENSOR's sole discretion to implement the license granted. LICENSEE may not assign this Agreement o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hereunder and any such purported assignment shall be void.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herein above written.

LICENSOR

LICENSEE

SCHEDULE 'A'

ATTACHED to and forming part of the Agreement dated as of the _____ between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censor")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censee").

1. Territory:

2. Contract: Exclusive/Nonexclusive

3. Master:

4. Artist:

Tracks:

5. Term:

6. Advance:

_____ USD (_____ US Dollars) as agreed

Licensee has to pay to Licensor a recoupable but not refundable advance.

7. Royalties:

a. Advances and Royalty shall mean:

(i) The royalty for the master shall be _____ (____%) percent on 100% percent of the PPD price.

(ii) "In House Regular" -compilations, royalty payable shall be _____ (____%) percent of the PPD price, pro rated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recordings embodied on such compilations.9

(iii) "Video Contribution" to be negotiated in good faith. (If available)

(iv) If the masters are sub-licensed to a third party as provided in the attached License greement, The LICENSEE shall credit to LICENSOR _____ (____%) percent of the nett receipts including advances.

(v) "Broadcast & Neighbouring rights" will be collected by Licensee during the term and for the territory only and will pay (____%) to Licensor. After the term Licensee has no rights on Broadcast & Neighbouring Rights whatsoever

(vi) No packaging deductions on any format.

(vii) LICENSEE will pay upon undersigned of this agreement an advance in the amount USD _____ recoupable against the above royalty. This agreement is only valid once the advance has been received by LICENSOR.

(viii) Synchronization will be collected by Licensee during the term and for the territory only and will pay _____ (____%) to Licensor. After the term Licensee has no rights on Broadcast & Neighbouring Rights whatsoever

(ix) Digital Right will be collected by Licensee during the term and for the territory only and will pay _____ (____%) to Licensor. After the term Licensee has no rights on Broadcast & Neighbouring Rights whatsoever

Your publishing affiliate (provided they are a member of the South Korean society for authors- and publishers) will obtain the sub-publishing rights, where they are entitled to collect _____ % of the total mechanical rights, and _____ of the total performing rights.

The remaining shares will be paid directly from the _____

Period _____ years, starting _____

You will be entitled to collect afterwards, and for a period of _____, all monies generated in the contractual period, but not paid.

8. Options:

LICENSOR

LICENSEE

<샘플서식 2> 라이선싱 계약 (외국음반사-국내음반사)(번역본)

본 계약서는 아래의 음반에 관한 계약으로 200__년 __월 __일 하기의 양당사간에 체결되어 총2통의 계약서로 작성되었으며 이하를 보증한다.

앨범명 : _____

(이하 "라이선서")

(이하 "라이선시")

전문)

A. 라이선서는 본 계약서의 "계약 지역"(본 계약서의 별첨에 규정)내에서 아티스트의(이하 "아티스트", 별첨에 규정) 공연이 수록된 마스터 레코딩(이하 "마스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다.

B. 라이선시는 계약 지역 내에서 음반의 제조, 판매, 유통 및 마케팅 시설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

본 계약에 기재된 전제 및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약인으로,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정의

본 계약에서 다음의 용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a) "음반"이란 음성의 전송을 목적으로 LP, 테이프, CD 형태로 제작된 복제물을 말하며, 마스터의 시각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 b) "계약 기간"이란 본 계약서의 첨부서류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한다.
- c) "마스터"란 현재 알려져 있거나 미래에 알려질 그 어떠한 방식에 의한 그 어떠한 물체 또는 유형물에 고정된 녹음물로, 그로부터 본 계약서 상에 정의하고 있는 음반의 녹음, 복제 및 제조에 이용된 녹음물을 말한다.
- c) "Person" 및 "Party"란 자연인, 법인 파트너십, 협회 및 기타 법인 조직 또는 이의 법적 승계인 또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 c) 본 계약상 마스터와 관련하여 "인도" 또는 "인도된"이라는 의미는 라이선시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로서, 음반의 제작에 이용 할 수 있도록 믹싱과 편집이 완결된 마스터를 제반 라이선스(복제권 제외), 유효한 승인과 동의와 함께 라이선시가 실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2. 권리의 부여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본 계약상의 부여되는 이행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선시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 a) 본 계약상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개작 또는 변형 없이, 마스터로부터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b) 제작된 음반의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단, 판매된 모든 저작물은 반드시 "Under Exclusive License from _____"라는 저작권 고지 표시가 삽입되어야 한다.
- c) 라이선서로부터 제공된 원 레이블에서 명시하고 있는 타이틀 및 아티스트명은 수정될 수 없다.
- d) 본 계약상의 레코드 판매와 관련하여, 홍보 및 거래적 목적에 한하여 아티스트의 이름, 사진, 초상을 발행하고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 e) 계약지역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지역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한 본 계약상 음반의 공연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e)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저작권에 의해 라이선서에게 귀속되며, 라이선시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i) 계약지역 내의 싱크로나이제이션권(동조화권)
 - (ii) 계약지역 내의 편집음반/사운드트랙에 대한 권리
 - (iii) 비디오 또는 오디오 장치의 일부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마스터를 이용할 권리
 - (iv) 계약지역에 대한 샘플 라이선스 부여권
 - (v) 계약기간의 종료 후 라이선시에게 인도된 마스터에 한하여 라이선시의 아티스트 앨범 목록에 싱글로서 포함되게 허락할 권리
 - (vi) 계약지역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광고 또는 프로그램에 마스터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

3. 마스터의 인도

- a) 라이선서는 본 계약에 따라 마스터의 복사본 각 1부를 라이선시에게 인도한다. 라이선시는 마스터의 인도에 소요되는 복제와 배송에 대한 라이선서의 비용을 지불한다. 마스터는 상업적 음반의 제작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스터의 복사본이 라이선시에게 최초 인도될 때, 레이드 레이블과 포장물에는 표시를 위하여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레코딩 아티스트의 성명과 함께 저작물의 제목, 원작자, 작곡자, 출판인의 성명, 저작물의 길이 및 기타 저작권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라이선시의 의무

- a) 라이선서로부터의 마스터가 인도되는 즉시, 라이선시는 마스터로부터의 음반을 복제 및 제작을 이행하고, ____ (일) 내로 계약지역 내에 출시하여야 하며, 계약지역내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b) 라이선시는 양당사자간 수시로 합의된 모든 형태의 음반을 출시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이러한 음반이 출시되는 즉시 보관을 위하여 복제본 5부를 라이선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사항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에게 귀속된다.
- c)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 의한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음반을 최고 가격수준 이외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다. 라이선시로부터 그러한 동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선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프리미엄 상품, 저가상품, 증가상품, 다이렉트 메일 또는 레코드클럽을 위한 음반의 판매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될 수 없다.
- d)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 제작되고 판매된 음반에 대하여 라이선서에게 본 계약의 별첨에서 규정하는 PPD(published to Dealer) 가격으로 산정된 선급금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e) 저작권이 보호되는 음악저작물 또는 기타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마스터에 대해서,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 출판인, 또는 계약지역의 저작권 관리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함에 동의하며, 라이선시는 저작권자, 대리인, 출판인, 또는 정수단체에 직접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로열티 규정 및 회계감사 조항

- a)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라이선시에게 본 계약상의 음반을 판매할 권리가 있는 한, 라이선시는 음반 판매에 대하여 표준회계 및 영업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록 및 장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라이선서에게 매 반기(6월)마다 이를 보고해야 한다. 라이선시는 각 기간의 종료시점인 6월 30일과 12월 31일로부터 ____ (일) 이내 해당 반기동안의 음반의 매출 및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회계명세서를 라이선서에게 제공한다.
 - i) 당 회계 기간동안 계약지역에서 제작된 음반의 수
 - ii) 당 회계 기간동안 계약지역에서 출시된 음반의 수
 - iii) 당 회계 기간동안 계약지역에서 판매된 음반 수 권장 PPD 가격
 - iv)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로열티 및 기타 지불금액
- b) 5(a)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회계 명세서의 송부와 동시에, 라이선시는 회계명세서에 따라 선급금을 초과하는 총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라이선서에 대한 모든 지불은 ____ 통화로 지급한다. 라이선시가 정부규제로 인하여 ____ 통화로의 지불이 불가능하고,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자국 통화로의 지불에 동의한 경우,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선서가 선택한 은행 계좌에 송금한다. 라이선시가 정부규정에 의해 그렇지 않았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세금 또는 지불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세액공제를 위하여 그 모든 지원에 협조한다.
- c) 라이선시는 마스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음반의 판매와 총 수령액을 증명하는 기록 및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또는 라이선서의 대리인)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종료로부터 2년 이내에, 정확한 감수를 위하여 장부에 대한 완결하고 철저한 감사의 이행할 권리는 갖는다. 라이선서가 장부의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일의 최소 ____ (일) 이전에 라이선시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증명된 과부족 지급액에 대하여는 _____ 은행의 기본 대출금리에 따라 (____ %)의 연체 이자가 계산된다. 감사결과에 따라 지불금액과 장부상의 차이가 5%를 초과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감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d)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일부를 반품에 대한 유보금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로열티 유보금은 특정 저작권 산정기간 동안 판매된 음반의 ____ %로 산정되어, 이는 다음 저작권 산정기간 중에 지급한다.
- e) 반품음반, 홍보용 음반('프로모션 음반) 및 매출 에누리로서 판매된 음반에 대해서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라이선시의 홍보용 음반은 최대 400장을 초과할 수 없다.

6. 보증, 사실증명, 제한, 면책

- a) 라이선시는 현재 계약지역에서의 음반의 제작, 제조,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본 계약의 체결과 완결한 이행을 위한 정당한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보증한다.
- b) 라이선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하고 이를 보증한다.
 - i) 라이선시에게 마스터가 인도된 시점에, 라이선서는 본 계약기간동안 계약지역에서 마스터를 이용한 음반의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온전하게 소유한다.(라이선서가 인도시점 또는 그 이전에 라이선시에게 고지할 것과 마찬가지로)
 - ii) 라이선서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의 완결한 이행을 위한 온전한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라이선시의 온전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라이선시 이외의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여하거나, 라이선시의 권리와 상충되는 그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지 아니한다.
- c) 라이선시의 권리에 대한 제3자의 침해 또는 이러한 침해의 시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이선시는 침해행위 또는 시도를 인지한 즉시 라이선서에게 이를 고지한다. 라이선서는 이러한 침해를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나, 이는 의무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라이선서가 법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필요한 모든 제반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송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라이선서가 지불하며, 모든 손해 배상은 라이선서에게 귀속된다.
- d) 라이선서가 c)에서 언급된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이러한 소송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온전히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라이선시에 의한 모든 법정소송은 라이선서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조건으로 발생되며, 소송의사에 대한 고지가 있는 후로 ____ (일)이 경과토록 회신이 없는 경우 이는 승낙으로 간주한다.
- e) 라이선서는 자신의 보증 및 약정사항과 상치되는 주장으로 라이선시에 대하여 또는 라이선시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 소송으로부터 라이선시에게 발생하는 피해, 비용, 경비, 수수료(타당한 변호사 비용 포함)로부터 라이선시를 면책하고 일절 패를 끼치지 아니한다.
- f) 라이선시는 자신의 보증 및 약정사항과 상치되는 주장으로 라이선서에 대하여 또는 라이선서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 소송으로부터 라이선서에게 발생하는 피해, 비용, 경비, 수수료(타당한 변호사 비용 포함)로부터 라이선서를 면책하고 일절 패를 끼치지 아니한다.

7. 채무불이행 & 시정

- a) 라이선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면고지를 통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라이선시의 권리 양도는 불가하고 라이선서는 계약지역에서 라이선스 재계약 권리를 갖는다.
 - i) 라이선시가 본 계약조항의 위반 또는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최고의 수령으로부터 (30일)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 ii) 라이선시에게 금융제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판결로부터 (30)일내로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 iii) 라이선시의 동산 또는 재산의 그 어떤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발부되고, 이러한 발부로부터 (7)일 이내 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 iv) 라이선시에게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에 절차가 발생한 경우
 - v) 회사의 청산 또는 해산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그러한 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 vi) 라이선시로부터 지불이 중지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 vii) 라이선시의 재산 또는 이의 일부에 대하여 관재인이 선임되고, 그러한 선임이 가결된 경우
- b)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하든지, 본 계약상의 부여된 라이선스가 종료된 경우, 라이선시는 즉시 모든 로열티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한다.
- c) 계약기간의 종료 즉시, 라이선서는 라이선시로부터의 그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이선시에게 제공된 모든 테잎 및 저작물은 라이선서의 결정에 따라, 라이선서의 합법적인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파기되거나, 계약지역의 라이선서의 지명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라이선시는 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라이선서로부터 제공된 모든 테잎 및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모든 복제 테잎, 마스터, 압인기등을 전량 파기하고, 라이선서에게 이의 폐기에 관한 공술서를 즉시 송부한다. 그럼에도, 라이선시는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____ (개월)동안 (치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상적인 영업에 준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음반을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라이선시는 서면으로 제조원가와 재고현황을 라이선서에게 고지하고, 본 계약상에 규정하는 로열티 산정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시점의 본 음반의 통상 PPD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라이선서는 계약만료 이후 그 시기에 상관없이 라이선시의 미판매 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원가로 구매할 권리가 있으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 의해 재구매된 음반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 d) 본 계약서상 당사자가 전달해야 하는 통지 및 회계서류는 반드시 서면을 통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 및 회계서류는 항공 속달특사의 등기우편 또는 서면으로 수령이 확인되는 기타 방법을 통해서 송부해야 하며, 상대의 실제수령 시점과 발송 후 ____ (일)이 경과한 시점 중 선행하는 시점이 수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통지의 송부와 동시에 당사자는 팩스를 통해 동일한 문서를 재전송해야 한다.
- e) 통지, 제명세서, 회계 서류 등 모든 통지는 라이선서의 다음의 주소로 발송되거나 : 라이선서 _____ 또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수시로 고지한 주소지로 발송되어야 한다. (이메일)

8. 마스터의 리믹싱

- a) 라이선시는 리믹스 하는자의 신원과 리믹스에 대한 비용을 라이선서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마스터의 사전 서면 동의의 없이 마스터를 리믹스 할 수 없다. 라이선시에 의한 리믹싱 비용의 25%는 공제한다.
- b) 라이선시의 리믹스 음반의 전세계 지역에 대한 저작권은 라이선서가 소유한다. 라이선서는 계약기간동안의 계약지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서, 라이선시에 대한 비용 지불 없이 라이선시의 리믹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서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무상으로 리믹스를 이용할 수 있다.

9. 비디오

라이선시 또는 라이선시의 라이선시가 계약지역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라이선서가 위탁한 비디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별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당 _____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제된다.

10. 옵션

별첨의 각 옵션조항과 관련하여 라이선시는 라이선서로부터 옵션조항이 인도된 날로부터 _(개월)내에 서면을 통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11. 완전한 합의

본 계약서 및 별첨은 본계약의 주체에 관한 양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기재하고, 본 계약 체결 이전의 양당사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모든 서면, 구두 합의사항에 우선한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가 서명하고 합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일방 당사자에 의한 특정 시점의 특정조항이 규정하는 권리에 대한 포기는 향후 동 조항 또는 기타조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본 계약상의 모든 구제, 권리, 의무는 누적되며, 기타 구제, 권리,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삽입되었으며, 본 계약서나 본 계약서의 어떠한 규정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독립 계약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 라이선시는 독립계약자로서 의무를 이행함에 동의한다.

13. 준거법

본 계약은 _____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법원에 의한 본 계약의 일부조항의 무효 또는 이행 불능 판결은 본 계약의 기타 잔여조항의 유효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통지를 포함하는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영문으로만 작성되는 것을 희망한다.

14. 분리 조항

본 계약의 일부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인 것으로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다른 잔여 조항의 유효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5. 법정 비용

본 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승소당사자는 상대방사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법정비용 및 계약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6. 양도

라이선시는 제3자 또는 자회사, 계열 및 상위법인, 기타 당사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라이선서는 정당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재량에 의하여, 본 계약상 발생하는 라이선서의 권리를 자신이 지정한 라이선시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 그 어떠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이상을 보증하여 본 계약 양당사자는 상기의 일자에 합의하고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라이선서

라이선시

2) 하청출판계약 (Sub-Publishing Agreement)

저작자와 최초로 저작권을 체결한 음악출판사(원출판사)가 외국지역에서의 음악저작권 관리를 위해 해외 주재 음악출판사에 하청을 주는 계약으로 관리지역, 저작물명, 기간, 분배율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다. 외국과의 계약이므로 영문서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샘플서식 2> 라이선싱 계약 (외국음반사-국내음반사)(번역본)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this _____ day of _____ by and between _____ of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Owner") and _____ of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sher").

This Agreement 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following facts :

A. Owner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music publish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wns or controls certain musical compositions and the copyrights therein.

B. Publisher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music publishing within the territory of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censed territory").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in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mutual terms and condition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1. Owner hereby grants to Publisher the following rights in and to each and every musical composition owned or controlled by Owner and now uncommitted for the licensed territory and in and to each and every musical composition hereafter acquired by Owner in the ordinary course of its business (excluding catalogue acquisition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the licensed territory, which musical compositions, together with any adaptations, arrangements and translation thereof that are made hereunder, are hereinafter referred to singly and collectively as "the compositions" :

- (a) The exclusive right to print, publish and vend copies of the compositions in the licensed territory ;
- (b) The exclusive right in respect to mechanical and electrical reproduction of the compositions in the licensed territory on phonograph records and pre-recorded tapes and transcriptions or by any other method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and the licensing of the compositions for such purposes in and for the licensed territory ;
- (c) The exclusiv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for profit (including broadcasting and television) of the compositions and the licensing of the compositions for such purposes in and for the licensed territory ;
- (d) The non-exclusive right to grant non-exclusive licenses for the recording of the compositions in and with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productions produced in the licensed territory ;
- (e) The non-exclusive right to make and publish new adaptations and arrangements of the compositions and translations of the lyrics thereof into the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licensed territory with the rights therein hereinabove provided in sub-paragraphs (a)-(d) hereof.

2. In connection with the rights granted to Publisher herein Owner hereby authorizes and empowers Publisher to de the following :

- (a) To collect and receive any all payments due hereunder in respect to the exploitation of the compositions in the licensed territory ;
- (b) To examine the books and records of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in the licensed territory in respect to the compositions ;
- (c) The non-exclusive right to enforce and protect the compositions in the licensed territory, including the institution of suits and proceedings in the name of Owner , and further including the right to enter into settlements, however, that Publisher shall first obtain Owner's written approval and consent with respect to any such settlement or compromise. In this connection Publisher agrees to protect and enforce the copyrights of the compositions and any subsequent copyrights produced therefrom in the licensed territory, and Publisher further agrees to undertake all necessary proceedings to prevent and restrain infringement thereof in the licensed territory.

3. Except for the rights in the compositions expressly granted to Publisher herein, Owners reserves all rights in the compositions and in and to the copyrights of all of the sam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following :

- (a) The exclusive right to dramatize, world-wide, the compositions and to license the use and performance of such dramatic versions throughout the world ;
- (b) The exclusive right to license world-wide uses of the titles of the compositions ;
- (c) The exclusive right to make literary versions of the compositions and to print, publish and vend such literary versions thereof throughout the world ;
- (d) The exclusive right to grant licenses for the entire world for the synchronization of the compositions with sound motion pictures, together with the right publicly to perform for profit the compositions contained in such sound motion pictures, provided that such motion pictures are produced and originated outside the licensed territory, and Publisher shall not be entitled to share in any world-wide fees received by Owner in respect to such world-wide use of any such motion pictures.

4. Publisher shall pay to Owner royalties hereunder as follows :

- (a) _____ percent of the retail selling price of each copy of the compositions in any form sold, paid for and not returned to Publisher ;
- (b) _____ percent of any and all gross receipts paid by any licensee of Publisher for each use of the compositions in any album, book, folio or newspaper ;
- (c) In respect to any of the compositions for which Publisher has not secured an indigenous recording in the licensed territory, then as to each such composition _____ percent of all gross monies collected by Publisher for mechanical reproductions thereof on phonograph records and pre-recorded tapes and for broadcasting and performance fees for the same and for any other uses thereof not expressly provided for herein. The term "indigenous recording" as used herein shall be deemed to mean a phonograph record commercially released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licensed territory, the master of which was originally recorded in the licensed territory ;
- (d) In respect to any of the compositions for which Publisher does secure an indigenous recording in the licensed territory, as such term is hereinabove defined, then as to each such compositions :
 - (i) _____ percent of any and all gross receipts paid by any licensee of Publisher for mechanical reproductions thereof on phonograph records pre-recorded tapes ;
 - (ii) _____ percent of the publisher's share of all gross broadcasting performing fees in respect to public performance thereof ;
 - (iii) _____ percent of all monies paid by licensees of Publisher for any other use whatever thereof.

5. (a) Publisher shall keep and maintain true and correct books and records in respect to the compositions, and within _____ days after _____ of each year Publisher shall render to Owner an accounting statement reflecting the gross amounts from each source for which Publisher is accountable to Owner hereunder as well as the royalty to be paid to Owner in respect thereto as specified herein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half year, and all monies shown thereon to be due to Owner thereunder shall be paid to Owner in United States currency together with each such statement.

- (b)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computation and payment of royalties by Publisher to Owner hereunder :
 - (i) No royalty shall be paid by Publisher upon professional copies of the compositions distributed for professional exploitation ;
 - (ii) The royalties to be paid hereunder shall be based upon all sales and uses of the compositions throughout the entire licensed territory whether by Publisher or by the Publisher's licensees or sub-licensees. The royalties payable hereunder shall not in any way be reduced or diminished by reason of any sub-license granted by Publisher ;
 - (iii) Publish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d shall pay to all local adaptors, arrangers and lyricists any royalties or fees out of Publisher's royalties without deduction from royalties payable to Owner hereunder ;
 - (iv) Owner shall have the right at any time during the term hereof to receive direct payment of _____ of Publisher's share of all performance royalties and fees, including broadcasting and television, directly through Owner's affiliated performing rights society or societies in the licensed territory upon notice to Publisher to such effect.
- (c) Owner and its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examine and inspect Publisher's books and records in respect to the compositions at Publisher's place of business above indicated at reasonable times and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Upon Owner's request Publisher will submit to Owner in respect to the compositions duplicate statements from the local performing rights societies, duplicate mechanical licenses issued by Publisher, and all other statements received by Publisher in respect to payment and collection of monies throughout the licensed territory. All costs of any audit shall be paid by Owner ;

provided, however, that if it shall be determined that a shortage of _____ Dollars (\$) or more has occurred, all costs of such audit shall be paid by Publisher ;

(d) In the event of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by Publisher which is not cured by Publisher within _____ days after requested to do so by Owner, Owne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upon such termination all rights hereunder shall revert to Owner ; provided, however, that subsequent to any such termination Publisher shall continue to account to Owner as provided herein in respect to Publisher's activities in respect to the compositions prior to such termination.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wner shall have the right immediately to constitute and appoint another agent and Publisher in the licensed territory.

6. Owner shall make available to Publisher all of the musical compositions in Owner's catalogue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all musical compositions hereafter acquired by Own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excluding catalogue acquisitions) shall be submitted to Publisher. Publisher shall submit to Owner _____ copies of each edition of the compositions published by Publisher and _____ copies of each recording originated in the licensed territory. Publisher shall copyright the compositions in the licensed territory in the name of Owner or in such other name or names as Owner may designate, and Publisher further agrees to cause the name of Owner to be printed on the title page of each copy of the compositions published in the licensed territory, together with a copyright notice in the name of Owner and in such other name or names as Owner may designate. All copyrights in the compositions and on any adaptations, arrangements and translations thereof shall belong solely to Owner. Publisher shall not grant any licenses or authorize any uses of the compositions for less than the prevailing rates therefor in the licensed territory ; and Publisher shall promptly register the compositions with the local performing rights societies in the licensed territory.

7.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be for a period of _____ years, commencing on _____ and terminating on _____.

8. Concurrently with the execution hereof Publisher shall pay Owner a nonreturnable advance in the sum of _____ Dollars (\$ _____) against royalties payable to Owner as provided herein.

9. All notices, statements and payments of whatsoever kind or character to be given hereunder shall be delivered by depositing the same, postage prepaid, in any mail box or other receptacle authorized for mail, addressed to the parties at the respective addresses set forth above, or at such other addresses as may be designated by either party giving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other.

10.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to as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There are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promises, covenants, or undertaking other than those herein expressly set forth. No waiver of a breach of, or default under, any provision hereof shall be deemed a waiver of such provision or of any subsequent breach or default of the same or similar nature.

11.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and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their successors and assigns ; provided, however, that Publisher shall not assign this Agreement or any of the rights granted to Publisher herein without Owner's prior written consent and approval.

12.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_____.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hereunto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By
Its

"Owner"

By

"Publisher"

본 계약은 200_년 _월 _일 _____(이하"오너")와 _____(이하 "퍼블리셔")간에 체결되었다.

〈샘플서식 4〉 Sub-Publishing 계약서(번역본)

본 계약서는 하기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합의되었다.

- A. 오너는 미국에서 음반 출판업을 영위하며 본 계약상의 음악저작물과 이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 B. 퍼블리셔는 _____ 지역에서(이하 “계약지역”) 음반출판업을 영위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는 상호간의 약속 및 합의를 약인으로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오너는 ____ 현재 오너가 소유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으며 본 계약지역에 위임되는 모든 음악 저작물 및 계약기간 동안 오너의 통상의 사업행위를 통하여 추후에 취득되는(카탈로그 인수 제외) 모든 음악저작물과 본 계약에 근거의 이의 개작, 편곡, 번안물(이하 단수 또는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저작물”)에 대하여 퍼블리셔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 (a) 계약지역 내 저작물의 복사본의 인쇄, 출판,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 (b) 계약지역에서의 레코드, 테이프 및 전사(transcription)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미래에 고안될 그 모든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물리적, 전자적 형태 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및 계약지역에서 등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권.
- (c) 계약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독점적 공연권(방송 및 TV 포함) 및 등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권
- (d) 계약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화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저작물의 녹음을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 (e) 계약지역에서 저작물의 개작물, 편곡물 및 계약지역의 언어로의 가사 번역을 통한 번안물을 제작, 출판할 비독점적 권리 및 그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본 조의 (a)~(d)호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

2. 본 계약에 의거 퍼블리셔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오너는 퍼블리셔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한다.

- (a) 계약지역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상 및 지불에 대한 징수 권리
- (b) 본 저작물과 관련한 특정 당사자, 법인, 기업의 기록 및 회계장부를 감사할 권리
- (c) 오너 명의의 소송 또는 법적절차의 발의 및 이의 화의를 이행할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지역에서의 해당 음악저작물을 집행하고 보호할 권리, 단, 퍼블리셔는 화의 또는 합의절차 이전 오너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퍼블리셔는 계약지역에서 본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지역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이를 방지할 것에 합의한다.

3. 본 계약상 퍼블리셔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저작권권은 오너에게 귀속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a) 전 세계 지역에서의 본 저작물의 드라마화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및 그러한 드라마화 버전의 전세계 지역에서의 이용 및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권
- (b) 전 세계 지역에서 본 계약상 저작물의 타이틀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권
- (c) 음악저작물의 문학물 버전의 제작 및 이의 인쇄, 출판,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 (d) 전 세계 지역에서 본 저작물과 관련한 음성 영화화물로의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이용허락권 및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영화화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공연권. 단, 이러한 영화화물은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 또는 생산된 것에 한정하며, 퍼블리셔는 전 세계지역에서 그러한 영화화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어 오너에게 귀속되는 로열티에 대한 청구권리가 없다.

4. 퍼블리셔는 다음에 따라 오너에게 본 계약상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 (a) 그 어떠한 형태든지 상관없이, 판매된 모든 저작물의 복제본에 대한 유통가격의 _____%를 지불하며, 이는 퍼블리셔에게 환급되지 아니한다.
- (b) 앨범, 도서, 플리오 또는 신문에서의 이용 등 퍼블리셔의 라이선시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령액의 _____%
- (c) 퍼블리셔가 계약지역에서 “현지녹음 레코딩”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저작물로부터 레코드 또는 테이프로의 물리적 복제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방송 또는 공연의 이용 수수료 및 본 계약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여 퍼블리셔가 수취하는 총액의 _____%를 지불한다. 본 계약상 “현지녹음 레코딩(indigenous recording)” 용어는 계약지역에서 일반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출시된 음반레코드로, 본 음반의 마스터가 계약지역에서 녹음된 것을 의미한다.
- (d) 상기에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현지녹음 레코딩”에 대하여 퍼블리셔가 계약지역에서의 “현지녹음 레코딩”으로 권리를 취득

한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 (i) 음반레코드 및 테이프로의 물리적 복제에 대하여 퍼블리셔의 라이선시로부터 수령한 총액의 ____%
- (ii) 방송 공연 수수료 총액 중 퍼블리셔 수익분의 ____%
- (iii) 그 어떠한 이용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퍼블리셔의 라이선시로부터 지불된 총액의 ____%

5. 퍼블리셔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기록 및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_____로부터 _____(일)내로 본 계약상 오너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직전 반기(6개월) 동안의 로열티 및 퍼블리셔가 오너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총액을 증명하는 회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서류의 제출과 함께 서류에 기재된 모든 금액을 미화(US\$)로 지불하여야 한다.

(b) 로열티의 산정 및 지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i) 전문적 이용(professional exploitation)을 목적으로 배포된 복제본에 대하여 퍼블리셔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
 - (ii) 본 계약서상 지불되는 로열티는 퍼블리셔에 또는 퍼블리셔의 라이선시 또는 서브라이선 등 계약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저작물의 판매 또는 이용을 근거로 산정된다. 본 계약상의 지불되는 로열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퍼블리셔의 그 어떠한 재이용허락의 사유로 인하여 감소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 (iii) 퍼블리셔는 모든 로컬 개작자, 편곡자 및 작사가에게 지불되는 로열티 또는 수수료를 자신의 로열티 수익에서 충당하여 지급하며, 이를 오너의 로열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iv) 오너는 계약 기간의 그 어느 때라도 퍼블리셔에 대한 통지를 통해 계약지역에서 오너가 제휴하고 있는 공연권신탁관리 단체를 통해서 방송 및 TV를 포함하는 모든 공연 로열티 및 수수료의 퍼블리셔 수익분 _____를 직접 지불 받을 수 있다.
- (c) 오너와 이의 대리인은 퍼블리셔의 정상 영업시간 중 합리적인 시간에 퍼블리셔의 사업장에서 계약상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기록 및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의 권리를 갖는다. 오너의 요청이 있을 경우, 퍼블리셔는 현지신탁관리단체 발급한 명세서 사본, 퍼블리셔가 발행한 물리적 복제 이용허락 사본, 그리고 계약지역에서 퍼블리셔가 지불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받은 모든 회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감사의 비용은 오너가 책임을 진다. 단, 감사의 결과 장부와 실질금액의 차이가 _____ dollars(US\$)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감사의 모든 비용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
- (d) 퍼블리셔에 의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오너의 시정요청으로부터 _____(일)내에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너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와 함께 퍼블리셔에 부여된 모든 권리는 오너에게 반환된다. 단,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 저작물과 관련한 퍼블리셔의 행위에 대하여 본 계약이 규정하는 의무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즉시 오너는 계약지역 내 신규 대리인 또는 퍼블리셔를 구성하거나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6. 퍼블리셔는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오너의 목록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오너가 통상적인 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은(목록 인수 제외) 퍼블리셔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한다. 퍼블리셔는 자신이 출판한 음악저작물 판본 각 _____부와 현지에서 제작된 레코딩 각 _____부를 오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퍼블리셔는 계약지역에서 오너의 명의 또는 오너가 지정한 명의로서 저작권을 등록 하여야 하며, 퍼블리셔는 계약지역에서 출판되는 음악저작물의 타이틀 페이지 상에 오너의 명의 또는 오너가 지정한 명의를 통한 저작권 고지와 함께 오너의 성명이 표시 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상의 음악저작물 및 이의 개작물, 편곡물, 변안물에 대한 저작권은 오너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 퍼블리셔는 계약지역의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지역의 공연권 신탁단체에 즉시 해당 음악저작물을 등록해야 한다.

7. 본 계약기간은 _____ 년이며, _____로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_____ 종료한다.

8.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퍼블리셔는 오너에게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로열티에 대한 선도금 _____ Dollars(\$)를 지불하고 이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9. 본 계약상의 전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 또는 회계 및 지불 서류는 서두에 기재된 양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해 통지한 주소지로 반송이 회신되는 선불요금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상대방사자의 우편함 또는 기타 우편 보관 장소에 도달되어야 한다.

10.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대상에 대한 양당사자의 완전한 이해와 동의로써 구성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상 양당사자에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어떠한 단언, 보증, 함의, 약정 또는 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의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권리의 포기하는 추후 동 조항 또는 기타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1.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 및 이의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단, 퍼블리셔는 오너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전부 또는 계약상 부여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2. 본 계약은 _____ 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

이상을 보증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서두에 기재된 연도와 일자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오너 : _____

퍼블리셔 : _____

6.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1. 개정 이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증가와 다양화에 부응한 대형 포털·모바일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 이하 "DC"하고 함)의 이용 및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DC 거래에 관한 세부기준이 결여되어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콘텐츠산업은 DC 유통경로에 있어서 대형 인터넷포털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중소·영세콘텐츠제작자(Contents Providers : 이하 "CP"라고 함) 간에 콘텐츠공급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에 포털 및 통신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강제하는 등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의 건전성을 해치고 산업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포털 및 이동사와 CP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DC 유통량과 정산의 투명성 계고의 문제, 일방적인 저작권 귀속 및 저작물 사용, 사업활동 방해 행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디지털콘텐츠의 다양성을 반영한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의3 제3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5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였으나, 부문별 DC 서비스의 차이 및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다양한 DC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 곤란

음악·영상·이러닝·포털·모바일 등 주요 5개 DC 분야를 중심으로 포털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Contents Providers : 이하 "CP"라고 함) CP 간에 체결되는 부문별 DC 공급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에 기여

2. 법적 근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의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1) 공통(포털 일반)

가. 부문별 표준계약서 제시

현행 표준계약서는 부문별 DC 서비스의 차이 및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다양한 DC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 포털·음악·영상·이러닝·모바일 등 주요 5개 DC 분야를 중심으로 포털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CP 간에 체결되는 부문별 DC 공급표준계약서를 제시

- (1)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 (2)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 (3)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 (4) 디지털콘텐츠(이러닝) 공급표준계약서
- (5) 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

나. 계약서 명칭의 변경

계약서 명칭이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변경

다.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에 자회사에 대한 특혜 금지 명시(제3조 제3항)

계약상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 포함

라.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난 추가 비용은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제4조 제3항)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를 넘어 온라인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함

마. 콘텐츠에 대한 권리 규정 등 신설(제11조)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콘텐츠제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권리의 부당한 탈취를 방지하도록 함

최근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콘텐츠제공자의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콘텐츠제공자로 하여금 진술보증하게 함

바. 명예 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 방지에 대한 일반조항 신설(제14조)

양 당사자는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한다는 거래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본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 가치 혹은 저작권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타방을 보호한다는 일반조항을 둬으로써 불측의 피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제15조)

웹 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신설 등(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제공료의 지급을 수개월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관행을 방지하고자 함

정산자료 제공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해 규정한 현 표준계약서상의 “2배”는 산출기준이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당사자가 정하도록 함

자. DC거래사실인증제도 활용 신설(제17조 제6항)

DC거래사실인증이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 받는 것을 말함. 이 제도를 통해 DC를 구매 또는 이용한 후 결제하게 되면 화폐단위, 결제금액, 결제수단 및 거래조건과 거래주체는 물론 위·변조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음

차. 이용실의 저하 시 서비스 중단 등 신설(제19조)

이용의 실익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즉 서비스 개시 이후 몇 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나 콘텐츠이용량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이 서비스 혹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되, 콘텐츠의 매출은 서비스 화면상에서 콘텐츠의 배치 및 노출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중단 기준을 정하여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 함

카.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제20조)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이용자의 권리가 관계된 동안에는 해당 콘텐츠의 폐기, 삭제를 유보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함

타. 분쟁의 해결 시 조정, 중재 해결 방안 제시(제23조)

분쟁해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할 수 있도록 함

2) 음악 콘텐츠

가. 계약 당사자 및 목적(제1조)

음악 콘텐츠를 관리하여 공급하는 신탁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또는 개별 권리자 등인 “을”과 당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콘텐츠서비스업자인 “갑”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임

음악 콘텐츠의 사용허락범위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이용자의 청약철회권리와 저작권 보호(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6항)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음악 콘텐츠의 미리듣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미리듣기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을”과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다. 사용허락의 범위(제5조)

음악 콘텐츠의 계약에 있어서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의 경우에는 “을”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함

라. 저작권권 침해의 책임(제11조)

저작권권(저작자와 실연자에 한함)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책임을 지도록 함

마. 정보제공료 산정(제15조)

콘텐츠 제공자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제공료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함(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징수규정을 참조하도록 함)

(3) 모바일콘텐츠

가. 계약당사자 등(제1조)

- 모바일콘텐츠 공급계약은 “을”(CP)이 직접 제작 또는 다른 CP로부터 확보한 콘텐츠를 이동통신사업자인 “갑”의 모바일 포털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정보이용료 수익 및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임

- 표준계약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가능한 많이 포섭하였음

나.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본정보 제공의무 및 부당행위 금지의무(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콘텐츠 관련 시스템 구축방향, 제작비 지원 기준, 메뉴구성 기준, 지원업체 선정 기준 등 콘텐츠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바일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배분 기준, 비율, 메뉴노출, 접속경로, 요금제, 설비제공방식 등 거래조건 및 지원에 있어 자회사, 계열사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토록 함

다. 정보이용료 및 수수료 책정(제7조)

-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 공정한 계약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 또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이용료 청구액과 이용자의 실제 납부액에 따라 정보이용료 미납·채납에상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CP에게 신속한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함
- 기타 서비스 및 과금 개시일, 요금제 종류, 요율 등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책정은 “갑”과 “을”간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속서에서 정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료 및 정보제공료 정산(제8조)

-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정보이용료는 기본적으로 CP의 수익으로 규정하여, 정보이용료 수익은 과금 및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전액 CP에게 배분되도록 함
- CP가 이동사에게 콘텐츠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콘텐츠관련 수입(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제외)은 “갑”이 “을”에게 정산하여 정보제공료로 지급하되, 정보제공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마. 콘텐츠에 대한 권리 등(제14조)

-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부당한 탈취를 방지함
- “을”이 제작한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을”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되,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이를 직접 개발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함

바. 마케팅(제19조)

-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갑”과 “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마케팅을 실시하되 상대방의 마케팅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함. 또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모바일 콘텐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 방식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마케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객정보 등을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을”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

4. 부문별 표준계약서

-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 (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거래조건 및 지원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합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각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 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충]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계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권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_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 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증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서비스 중단 등] ① “갑” 또는 “을”은 서비스 개시이후 ____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 ____ 이하이거나 콘텐츠이용량이 ____이하일 경우에는 서비스 혹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서비스 화면상 콘텐츠의 배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이 서비스 일부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정보제공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 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 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 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 등을 포함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배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6.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신탁관리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7. ‘관리콘텐츠’라 함은 최종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 중 “을”이 관리하고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듣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할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이 서비스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⑥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용허락의 범위] ① “갑”의 콘텐츠의 사용은 아래에 정해진 범위에만 한한다.

② “갑”은 “관리콘텐츠”를 전하여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동의를 통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0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다만, “갑”이 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작권권 침해의 책임] “갑”은 관리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권(저작자와 실연자에 한함)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야 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제공료에 관한 상세한 산정기준 등은 해당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부속서에 정한다. (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신연자협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징수규정을 참조한다.)

③ “갑”이 제1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인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 “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 “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로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8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인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

이동통신사업자(이하 “갑”이라한다)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이하 “을”이라한다)는 모바일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모바일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 서비스를 위하여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이 정보이용료 수익과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포털 등의 콘텐츠 유통을 위한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2. “모바일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를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포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모바일 포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이용료”란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한 대가로 해당 콘텐츠에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하며, 데이터통화료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보이용료 이외에 “갑”이 “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제3자”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자, 해당 권리를 위탁 받은 자, “갑” 이외의 콘텐츠 유통 및 제작과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뜻한다.
7. “MCP(Master-CP)”란 “갑”의 콘텐츠 메뉴구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8. “이용자”라 함은 “갑”의 모바일 포털에 접속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기타 콘텐츠 관련 수입”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하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는 제외한다.
10. “통신회선”이란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의 시스템 간에 연결하는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 접속회선을 뜻한다.
11. “콘텐츠(정보)”란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뜻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정보이용료 수익 정산액 및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

사용 등 사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콘텐츠 관련 시스템 구축방향, 제작비 지원 기준, 메뉴구성 기준, 지원업체(MCP 등) 선정 기준 등 콘텐츠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배분의 기준, 비율뿐만 아니라 메뉴노출, 접속경로, 요금제, 설비제공방식 등 거래조건 및 지원에 있어서 “갑”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⑥ “갑”은 “을”이 자기책임 하에 추진하는 콘텐츠 광고주 유치, 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콘텐츠제공 등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마케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이용료에 대해 추가적인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 및 통신회선

제5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통신회선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 개발 및 통신회선 구축을 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구축·운영·유지보수한다.

② 통신회선 또는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및 통신회선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3장 서비스 및 수익배분

제6조 [서비스의 범위]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타 매체에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정보이용료 및 수수료 책정] ①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 또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하 “수납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을 기준으로 수익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료 미납·체납예상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이용료 미납·체납예상액은 지난 12개월간의 이동전화 요금 중 미납·체납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정보이용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요금의 최종적인 수납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정보이용료 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이 정보이용료의 과금 및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을”은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수료는 전체 정보이용료 수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을”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첨부된 부속서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8조 [정보이용료 및 정보제공료 정산] ① “갑”은 정보이용료 수익을 전액 “을”에게 지급하되, 정보이용료 과금 및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___%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갑”은 “을”의 기타 콘텐츠관련 수입의 ___%를 정보제공료로 지급키로 한다. 단, 정보제공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급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급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산자료에는 해당 콘텐츠의 정보이용료 수익, 기타 콘텐츠 관련 수입, “갑”·“을”·“제3자”별 정산액, 번호별 수납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수익배분과 관련된 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번호별 수납내역은 “갑”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⑧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⑨ 이 밖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의 기준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기타 상 관습에 따른다.

제4장 계약기간 및 해지 등

제9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 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 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 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 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 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 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보이용의 권리 및 보호

제13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4조 [권리 및 보충]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를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 규 격,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콘텐츠 등 모든 지적재 산권의 소유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 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 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 형 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9조 [마케팅] ① “갑”과 “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콘텐츠 마케팅을 실 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케팅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고객 정보 등)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 조한다.

③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의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 방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에 의해 문자메시지 등 “갑”이 소유한 설비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는 비용을 “을”에게 부담토록 할 수 없다.

제20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 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 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 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편집위원장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집필위원장

김진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실 본부장

외부집필진(가나다 순)

강지원 디크루 대표
금기훈 엠넷미디어(주) 디지털미디어사업본부 본부장
김관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팀장
김수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구원
김승미 일본 히토치바시대학교 강사
김연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과장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박강서 포커스컴퍼니 연구원
박성만 메이브스퀘어 팀장
박준흠 가습네트워크 대표
서석민 포커스컴퍼니 팀장
성기완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콘텐츠기획실장
이어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Korea 대리
이종규 (주)인터파크INT 공연사업본부장
정세일 유플러스연구소 연구원
조용순 한북대학교 교수
최광호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팀장

내부집필진

윤재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장
노준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과장(총괄 책임)
유은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주임
원혜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보조연구원

검 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

